

용인YMCA 청소년인권포럼

1318끼리포럼

“1318끼리 포럼”

## 「청소년과 인권」

청소년인권 이제 청소년이 말합니다!

청소년과  
인권

용인YMCA

- ▶ 일시 : 2005년 11월 5일(토) 오후3시~5시
- ▶ 장소 : 용인시 여성회관 작은어울마당
- ▶ 주최 : 한국YMCA 전국연맹, 용인YMCA
- ▶ 주관 : 용인YMCA 청소년또래인권기자단
- ▶ 후원 : 용인시, 용인시민신문

용인YMCA 청소년또래인권기자단

용인YMCA 청소년인권포럼

“1318끼리 포럼”

## 「청소년과 인권」

청소년인권 이제 청소년이 말합니다!

- 일시 : 2005년 11월 5일(토) 오후3시~5시
- 장소 : 용인시 여성회관 작은어울마당
- 주최 : 한국YMCA 전국연맹, 용인YMCA
- 주관 : 용인YMCA 청소년또래인권기자단
- 후원 : 용인시, 용인시민신문

용인YMCA 청소년또래인권기자단

## 일정

□ 15:00 ~ 15:20

개회선언

인사말

□ 15:20 ~ 16:20

[제1부]

사회 : 정영랑 (고교YMCA 회장)

발제 : 지역내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방향과 과제

· 이밝은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지정토론

1. 용인지역내 청소년인권의식 조사발표

· 윤지희 (용인고등학교 1학년 / YMCA 인권기자단)

2.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 안병범 (용인고등학교 2학년 / YMCA 인권기자단)

3. 학교에 청소년은 없다?

· 전재호 (태성고등학교 2학년 / 블루스카이 기자단)

4. 청소년과 투표권

· 전누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 낮추자)

### 질의응답

□ 16:20 ~ 16:40

[제2부] 청소년 자유발언!

① 1318권리?!! 청소년인권

· 정원영(태성고1)

② 묻혀질대로 묻혀진 청소년인권

· 오은정(용인고1)

□ 16:40 ~ 17:00

### 종합토론

## 목 차

### I. YMCA 청소년 또래 인권기자단 소개

YMCA 청소년 또래 인권기자단의 소개 및 활동

- 정영랑 (고교YMCA 회장) ..... 7P

### II. 포럼 원고

#### 1. 발 제

청소년 인권 “누구의 입장에서 청소년인권을 말할것인가..”

- 이밝은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11P

#### 2. 지정토론

##### ① 용인지역내 청소년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발표

- 윤지희 (용인고 1/ YMCA 인권기자단) ..... 21P

##### ②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는?

- 안병범 (용인고 2/ YMCA 인권기자단) ..... 49P

##### ③ 학교에 청소년은 없다?

- 전재호 (태성고 2학년 / 블루스카이 기자단) ..... 55P

##### ④ 청소년과 투표권

- 전누리 (청소년위원회 위원/ 낮추자) ..... 59P

### III 청소년 자유발언

##### ① 1318권리?!! 청소년인권

- 정원영(태성고1 / YMCA 인권기자단) ..... 69P

##### ② 묻혀질대로 묻혀진 청소년인권

- 오은정 (용인고1 / YMCA 인권기자단) ..... 73P

### I.YMCA 청소년 또래 인권기자단 소개

## 용인YMCA 청소년인권 기자단 소개

### ❶ YMCA 청소년인권기자단이란??

청소년인권문제의 핵심은 바로 청소년자신에 달려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문제에 대해 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청소년 인권문제 해결의 주체는 바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지역사회와 또래 친구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청소년인권mentor가 되어 지역의 청소년들의 인권을 스스로 지키고, 인권기자단 활동을 통해 용인지역내 청소년들에게 인권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❷ 우리들의 활동내용

#### ① 청소년 또래 인권 mentor 되기 준비 협의회

일시 : 7월중

장소 : 그루터기 회의실

내용 : 우리가 또래 인권 mentor가 되기 위해서는 ??

앞으로의 진행방향 공유/ 토의/ 지역사회 문제 생각해보기

활동계획 수립

우리들의 다짐 ( 청소년 인권 meontor가 되자!! 결의식 )

#### ② 청소년인권교육 (2회)

○ 일시 : 8월, 9월중

○ 대상 : 용인YMCA 청소년인권기자단

○ 내용: 청소년인권의 중요성을 인권교육을 통해 나 스스로 깨닫고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

이 스스로 또래 인권 mentor 가 되어 또래친구들에게 인권에 대해 알리기!

온라인 소모임이나 클럽을 통해 인터넷인권신문과 내용을 만들어서 블로그하고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지역의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린다.

#### ③ 청소년 인권 기자단 활동 ( 지역내 문제발견/ 토론/ 활동 )

○ 일시 – 8월~10월

○ 내용 – 청소년인권의식 조사활동 및 인권침해 사례조사, 인권운동가 인터뷰등을  
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에 정기 연재한다. .

지역신문에 “용인지역의 청소년인권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월 2회 정기연재

- 활동방법 : 토론과 토의를 통해 설문지 작성, 조사/ 인권피해사례조사/ 전문가 인터뷰

#### ○ 세부활동내용

- 1) 지역내 청소년 인권의식 조사 활동 (기초조사)

인권의식 조사 설문지 작성 → 인권의식조사 활동 (지역내 청소년 무작위 추출 1,000명)

→ 데이터 입력 → 의식조사 결과산출 →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에 보도

- 2)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조사 활동 (사례파악)

- 각 학교의 청소년인권 mentor들이 지역내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3) 청소년인권운동가 인터뷰 활동 (전문가 인터뷰)

- 현재 청소년인권을 위해 운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앞으로 청소년인권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들어본다.

#### ④ 지역청소년 열린 포럼

- 일시 : 11월중

- 활동명 : 청소년 인권포럼

주제 “청소년인권 이제는 우리가 말한다!!”

- 내용 : 지역내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그동안 지역사회의 청소년인권문제에 대한 활동 보고와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 ⑤ 평가활동

- 일시 : 11월중

- 내용 : 활동보고와 평가회

- 영상으로 보는 청소년 인권 파일 (영상과 사진으로 그동안의 활동보고)  
 - 그동안의 활동 평가 해보기  
 -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또래친구들에게 인권mentor가 되어주었나?  
 - 얼마나 지역사회에 홍보했고, 청소년인권신장에 기여했을까?  
 -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인권 mentor가 되기 위한 다짐

## II. 포럼 원고

## 누구의 입장에서 청소년 인권을 말할 것이가

이밝은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그녀의 가방

6살 나이의 딸이 있다. 그녀와 나는 비교적 잘 소통하는 편이다. 내가 그녀에게 짜증을 부리지 않고, 그녀가 나에게 불명확한 이유로 인한 땅깡을 부리지 않는 한 그녀와의 사이는 평화롭고 한가롭고 때로는 우아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갈등을 평등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내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그녀가 그녀의 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다.

어쨌든 그녀의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침범하고 있던 나를 발견한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하려 한다. 그녀와 나, 그녀가 다니는 어린이 집 선생님들은 그녀 가방 안에 들어가는 편지로 소통한다. '이번 주 보육 활동은 이런 것입니다. 이번 달은 어디로 들살이를 갑니다. 보육료 밀리지 말고 넣어주세요.' 등등. 주로 가정 통신문 같은 문서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 가방 안에서 편지를 꺼내던 나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엄마는 왜 내 가방을 맘대로 열어 보는데?"라고 묻는 그녀의 동그란 눈동자는 정말 궁금한 모양새였다. '왜 너는 내 물건을 네 맘대로 열고 닫고 하는 거지?'라고 묻는 눈빛이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쪽 팔렸다. 어디 가서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와 자본 권력을 질책하고 나무라면서 온갖 잘난 체를 했던 처지에 그녀의 질책은 자기 눈 안의 들보 같은 것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절대로 그녀의 가방을 맘대로 열지 않게 되었다. 그녀에게 선생님이 주신 편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녀에게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가방에서 꺼내도 되겠냐고 물어보지 않는 한 그녀의 가방은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그녀의 가방을 맘대로 열어보던 근간에는 그녀 권리, 어린이 인권에 대한 여전한 무감각과 패권이 존재했던 것이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써 그녀에게 사생활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는 잠시 유보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의 가방을 맘대로 개방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가방 문제가 아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아마도 나는 어떤 형태로든 쉽게 그리고 지능적으로 그녀의 인권을 아주 많이 침범하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내가 어른으로써 또는 엄마로써 누릴 수 있는 권력은 법으로도 뒷받침 되어있다. 민법 909조는 「미성년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맙소사 누군가 당신에게 "너는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000에게 복종하라"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이것이 어

린이와 청소년이 당하는 인권문제의 핵심이다.

### 인권(보호)을 위해서 인권을 유보 하다

보호를 이유로 한 권리 제한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다. '보호를 위해서'란 명분으로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안으로 유기된다. 그래서 아동 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라는 통계가 있는데도, 가정안의 폭력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살짝 비켜서서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한편으로 청소년 두발 단속이건, 소지품 검사건, 학교 폭력이건 모두 학교장의 전권 아래,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있다.

청소년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인권이 보호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어 학교와 가정 밖으로 나와야 한다. 여느 인권 의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인권역시 국가와 법에 의해 공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그 자체로써 권리를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아직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율적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는 식의 태도는 '권리의 자율적 행사 능력은 권리를 존중받고 권리 주체로써 이를 행사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이다.

청소년들이 권리주체로써의 가치 있는 경험을 할 때, 청소년은 건강하게 생존하고 발달하고 보호받고 참여할 권리를 비로써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청소년은 발달과정에 있는 존재적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한 도움과 혜택을 누릴 권리도 함께 가진다. 하지만 한국 청소년들은 권리 주체로써의 경험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보호나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자. 내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언제부터 주장했던가.

### 내 머리에 손대지 마라 / 우리는 돼지고기가 아니다

2005년, 청소년 노컷 운동에 불이 붙었다.<sup>1)</sup> '노컷(no cut)!' 자르지 말라는 말이다. 무엇을? 그/그녀들의 머리를 마음대로 자르지 말라는 것이다. 첫 도화선은 인터넷 카페 모임이었다. 이 카페에서 청소년들은 '바리깡'(학교 두발단속은 청소년들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거나 라이터로 태워버리는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이라 불리는 강제 이발 등 인권침해 사례를 발언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모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두발 단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명 운동을 전개했고 인근 학교에서는 두발 단속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 상징석 등에 스프레이 락카로 'NO CUT'을 쓰거나 운동장 바닥에 '인권의 공동묘지'

1) 2000년에 이미 청소년들 스스로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운동이 있었다. 당시 두발규제 철폐의 요구는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 번져나갔고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기도 했으며 청소년인권단체들이 거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청소년들은 두발규제 반대 운동을 통해 학생인권보장이라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벌였고 당황한 교육 당국은 각 학교별 의견 수렴을 통해 두발규정을 다시 정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결국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두발규정은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듯 하다가 별다른 변화 없이 일단락되었다.

0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활동은 점점 온라인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은 5월 14일 '두발자유화를 촉구하는 캠페인 및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각 시도 교육청들은 학생 두발자유화 서명운동과 학생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징계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로 내려 보내고, 락카 시위가 일어난 학교에서는 시위 제보자에 대한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이후 이십여 명의 청소년들이 자기 몸을 죽음의 강위로 던지고 있다. 그들이 자살한 이유는 대부분, 성적 비관이나 학교 폭력에 의한 것들이다. 이런 죽음의 배경에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도 대입 전형 제도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2008년도 대입 전형 제도는 '학교 성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대입 전형에 반영되는 내신 비중을 강화하여 교육의 중심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 오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대학별로 확실하게 서열이 정해진 현행 교육체계에서 교육부의 발표는 공교육 강화는 커녕, 사교육 시장에 '내신 등급 향상 비법'과목만을 추가시킨 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대평가와 등급제로 내신이 강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 상대로써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잠자는 친구를 깨우지 않아서 친구의 수행평가점수가 낮아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다.<sup>2)</sup>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돼지고기가 아니다. 등급을 매기지 마라"는 청소년들의 절규에는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죽어가는 친구들과 경쟁 사회에 매몰되는 자신들을 향한 위기감이 묻어나고 있다.<sup>3)</sup>

### "입 닥치고 가만히 공부나 해" 학생다움이라는 신화

하지만 청소년들의 이런 위기감과 처절함은 기성 질서 앞에서 생뚱맞은 것이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 청소년 두발문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 청소년 단체 활동가와 함께 청소년 두발규정이 인권침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 하지만 토론회는 인권이란 단어 앞에서 서성이다 본 게임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교장과 학부모의 요지는 '학교에는 학교의 질서가 있고 학생들은 학생다워

2) <http://www.1318virus.net> "잠자는 친구를 깨우지 않아." 고등학교 입학 첫 중간고사를 끝낸 부천 시 S고 여학생들과의 인터뷰 기사 중

3) "칭찬합니다! 항상 변덕을 부려주어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주는 그런 교육제도를 칭찬합니다! 교육 제도를 바꾸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내신전쟁]이란 전쟁 속으로 밀어 넣어주어 차갑고 날카로운 마음을 심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의 공책을 찢어버리고 싶고 상위권아이들은 거의 왕따 수준이 되고 꽃다운 나이에 자살충동을 못 이겨 자살하게 하시는 점 정말 칭찬해드립니다. 도덕시간에 잘못된 주의라고 배운 개인주의를 철저하고 자세하게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점 칭찬합니다! (작성자 고등학교 1학년생) - 서울시 교육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

야'하기 때문에 두발문제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모순이라는 것이다. 내 머리 내 맘대로 하겠다고 청소년들이 목청 끊어지도록 외치건 말건, 두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청소년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고 하건 말건, 그런 이야기는 '학생다움'의 신화에 도전하는 불건전한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결국 두 분 말씀은 '두발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 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학생답지 못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학생다움'은 어떤 것이고 그 기준은 누구의 관점일까. '~다움'이라는 주관적인 문구 안에는(여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는 남성중심의 사회적 시선이, 군인다움을 강요하는 군대에는 상하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듯이)'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식의 시점과 주관이 개입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말씀대로라면 '학생다움'의 기준은 배우는 입장보다는 가르치는 입장의 시점과 주관이 듬뿍 배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배우는 이들이 단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져야, 가르치는 이가 통제하고 관리하기에 효율적이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일찍이 노자 선생은 도덕경에서 「슬기로운 교사는 자기 일을 하고 거기서 멈춘다. 그는 세상이 대부분 자기 통제권 밖에 있음을 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 배움의 도를 거스르는 짓임을 안다.」<sup>4)</sup> 고 '배움의 도'를 말했다.

자유분방한 머리 모양을 하고, 시건방지게 앉아서 수업을 듣는 서구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귀 밑 머리 몇 센티를 고수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녀들보다 더 교사들을 존경하고 수업 받기를 즐거워하지도 않을 성 싶다. 거칠게 말하면 '학생다움'의 밑바닥에는 독재 권력에 충성하고 위계질서에 맹종한 자네들 생존방식에 대한 답습, 권력에 대한 아부근성이 존재하고 있다. 권리에 대해 배우지 못했으니 상상력이 있을 수가 없다.

제다가 청소년들이 두발규제를 반대하는 집회, 내신등급제로 죽어간 친구들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여하려 하자 교육청들은 각 학교에 급하게 공문을 내려 보냈다. 집회 참여 학생들을 단속하고 온라인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내용의 공문이었다.

입 닥치고 공부나 해야 할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와 자신들을 옮겼는 사슬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예의 '학생다움'이라는 신화가 있다.

하지만 인권의 오랜 역사를 보더라도 인권은 권리를 빼앗긴 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투쟁한 역사였다. 이걸 빼앗는 자는 기득권자들이었으며, 인권의 주인이 가져야 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포식하는 학대자였다. 교육청과 학교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계된 일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임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국회가 1991년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 12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

4) 패밀리 메츠 풀어 씀, 「배움의 도」(민들레 출판사, 2003), 48p

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에 대한 위법이기도 하다.<sup>5)</sup>

### 징계위주의 단속 논리 CCTV, 스쿨 폴리스

교육부 등 정부 당국이 청소년 인권에 도전하는 방식은 가지가지다. 지난 3월 정부 5개 부처가 담화문을 통해 밝힌 '학교 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일진회를 단속하고, 자신 신고 기간 동안 고발 및 접수를 받는 한편 학교 내 경찰관을 상주시키고 취약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폭력예방 교사 및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의 어디에도 학교 폭력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는 없다. 더구나 학교 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 폭력의 문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은 입시만을 위해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산라인, 가부장적 권위를 빼닮은 학교장과 교사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있다. 내재된 폭력적 문화가 폭력을 양산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치유 대책이 없이 교육적 대책도 아닌, 징계 위주의 단속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학교 후미진 곳에 CCTV설치하고 스쿨폴리스 상주시켜 봐야 청소년들은 CCTV없는 곳에서 담배 피우고, 스쿨폴리스 없는 곳에서 뻥 뜯으면 된다. 더욱이 이런 대책이 반인권적인 것은 청소년들이 감시와 통제를 내면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이를 쉬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나 보호조차 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이제는 청소년들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다.

### 학교 밖 청소년들 없거나 무시되거나

학교 안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바깥의 청소년들은 더 가혹한 현실 앞에 놓여있다.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란, 스스로 탈학교를 선택한 일군의 지사(뭐 이들도 꼳대들 눈에는 이탈자로써 크게 벗어나지 않을 성 싶지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삼류인생, 어찌 해 볼 도리조차 없는 낙오자들로 취급된다.

일전에 모 소년원에 인권교육을 다녀왔다. 방문했던 소년원은 소녀들의 수용시설이었는데, 이들과 '사법절차 속에서의 인권'을 교육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분류심사원, 소년원에서 당했던 인권침해 사례를 '그때 하고 싶었던 말' 속에 담게 해 보았다. 그러자 이들은 그 당시 겪었던 무참했던 기억을 분노와 자조를 섞어 토해 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도 않은 일까지 뒤집어 씌웠어요." "자꾸 때리면서 반말

5)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정치활동과 사회참여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한국 현실을 우려하면서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0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들의 정치활동과 사회단체 가입을 불허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을 해서 나가서 신고한다고 했더니 이년, 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말도 안 해주고, 돈 있는 집애들은 다 무죄로 나가고..”

이들은 경찰서와 법원 등에서 인간적인 모욕뿐만 아니라 심심치 않은 체벌(고문)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대한 고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소년법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온화한 심리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을 알았을 때, 그런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구동성 입을 모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용된 청소년 대부분이 빈곤가정의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폭력적 양육 환경에서 폭력을 일종의 표현 수단으로 익혀 온 탓에 존중의 태도와 평화적 대화방법이 단지 착한 사람들의 것, 그래서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여성, 가난, 청소년, 탈학교라는 삼 사중의 억압 속에 갇힌 이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무너진다.

### 노동 현장에서 소외되는 청소년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어른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 단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시달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도 다반사이다.

가까운 친구가 유명한 햄버거 회사에서 매니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말은 월 말 정산 때가 제일 바쁘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노동부 세부규칙에 맞춰,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 법률상 하자 없도록 서류를 꾸며야 되기 때문이란다. 서류 꾸미기에 바쁘다는 말은, 노동부 최소기준에 맞춰서 벌금 받는 일 없도록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끝자리가 1원 오르면, 1원만 임금을 올려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초과 근무, 야간 근무에도 투입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해한 작업장에서 일하지 않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먼 이야기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 사소하게는 일상적으로 반말을 쓰거나 명령을 하는 행동에서부터 성추행이나 폭행 같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런 피해를 입어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항구를 알거나 찾기 어렵다. 그 항구에서 다시 한번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어른과 똑같이 일해도 차별을 받는 현실, 최저임금조차 차이가 나는 현실, 그것 자체로도 청소년들은 이미 너무 많이 차별

받고 있음에도 말이다.

청소년들은 노동을 통해서도 성장한다.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나이를 이유로 천대받지 않을 때, 노동을 귀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노동이 귀중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 주체는 투쟁하고, 조력자는 제대로 관점을 정립해야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앞서서 밝힌 대로 1991년 한국국회는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권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은 일천하기 그지없었다. 위 협약의 주요한 이행 조치 중 42조 “적절하고 적극적 수단을 통해 성인과 아동에게 협약을 널리 알릴 의무” 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내법과의 마찰이 있는 조항은 유보하거나 무시해 왔다. 위 협약의 이행감시기구인 UN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 이행에 대한 권고 내용의 많은 부분은 묻혀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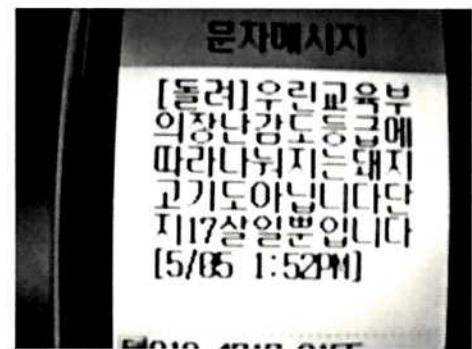
그러나 인권의 역사는 계약의 자유를 위한 부르주아들의 협소한 승리에서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다수 민중들의 투쟁으로 확대 발전되어왔다. 결국 청소년 인권의 역사도 청소년들 스스로의 권리투쟁으로 인해 새롭게 쓰여 질 것이다. 그래서 두발규제 철폐, 내신 등급제 반대라는 형태로 시작되고 있는 거리의 운동은 의미 있다. 아직은 조직되지 못한 열망으로 인해 우여곡절과 무수한 탄압을 겪고 있지만 주체가 투쟁하면 권리가 찾아오게 된다. 승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청소년 인권운동 주체들은 지난 청소년 조직들이 밟아온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어른을 답습한 권위와 분열의 모양새를 버리고 가장 자유롭고 평등하고 도발적인 모습으로 여타 다른 인권운동의 메신저가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조력자들인 청소년 단체는 자신들의 관점을 재정비할 시점에 왔다. 여러 정부부처가 청소년 인권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 규모를 부풀리면서, 많은 조직이 청소년 인권 교육, 청소년 인권 활동을 자기 조직의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청소년 인권은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인권은 당사자들에게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는 생존의 조건이기 때문에, 선불리 접근해서도 다른 이해와 요구로 선점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단연코 투쟁하는 주체의 조력자가 될 수 있을 때만이 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인권 프로젝트를 할 자격이 있다.”

인간은 생의 모든 순간 행복할 권리가 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받기 위한 집은 필수의 문제이듯이, 인간다움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진 속에서 모든 인간은 삶의 희노애락을 영위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어른들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시절이 20년이라는 것은 청소년기를 지난 어른들에게도 잔혹한 일이지 않나. 청소년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청소년들이 삶의 주인으로 서는 것이 못마땅한 이유는 '존중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며 '내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공포이거나 자기 기득권으로 인한 욕심에서 기인한다. 공포에 기대어 사는 삶을 버리고 한 걸음, 어른의 관습을 버리고 한 걸음, 사심을 버리고 한 걸음. 그렇게 걷다보면 청소년과 비청소년 모두 행복해지겠다. 자꾸 자꾸 나가면.



## 용인지역내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윤지희 (용인고1/ YMCA 인권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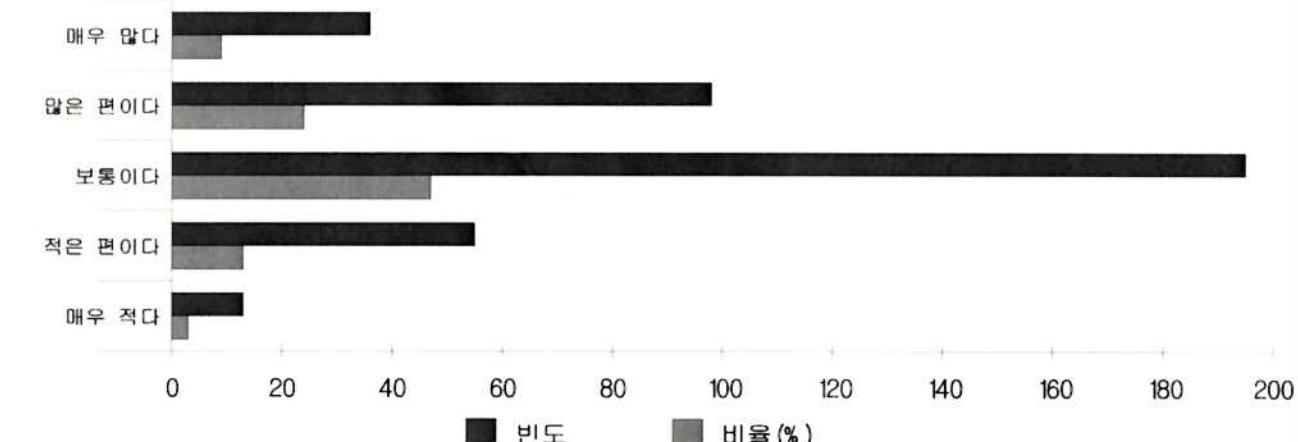
- 설문조사 기간 : 2005년 9월 12일~9월 24일 (2주일간)
- 설문조사 대상 : 고등학생 500여명 (무작위추출)
- 설문조사 방법 : 직접조사

### I.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 ①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 인권에 대한 관심도

지역내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관심도는 대체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80% 정도의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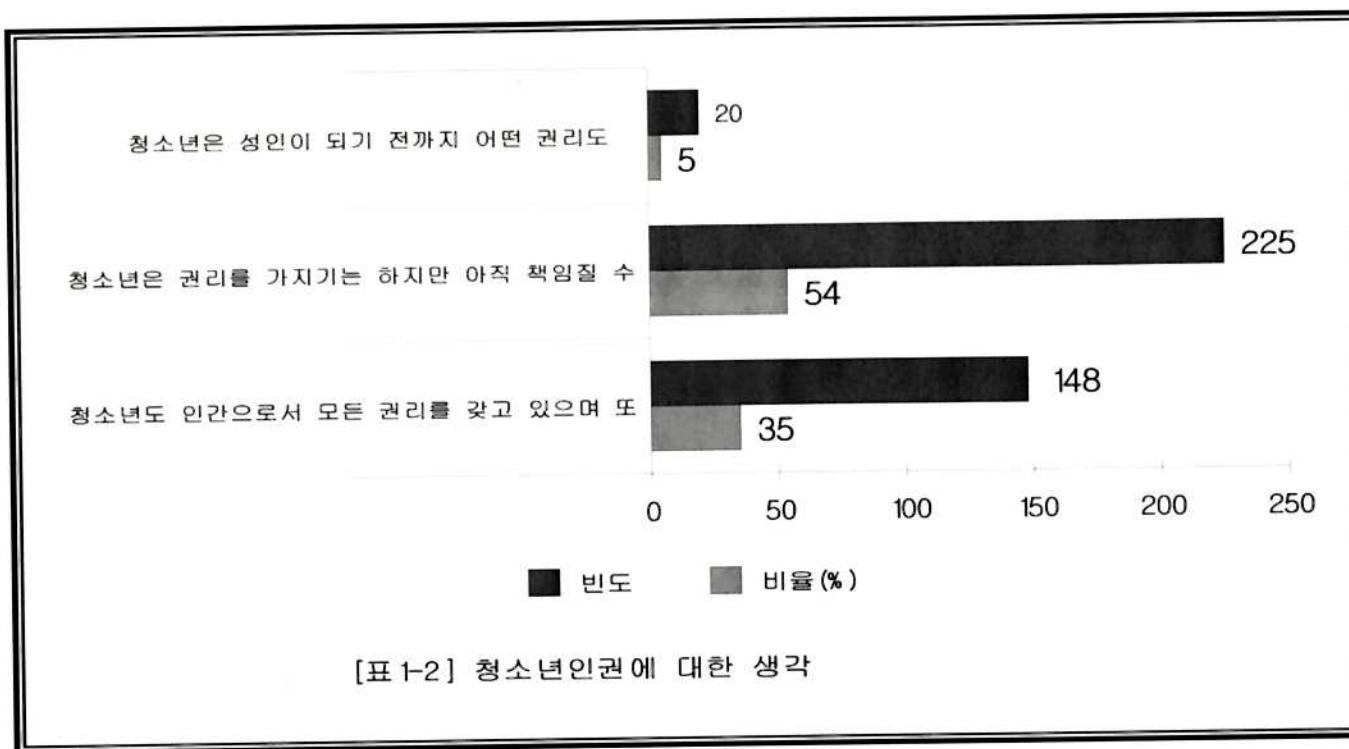


[표 1-1] 인간으로서의 권리(인권관심도)

#### ② 청소년인권에 대한 생각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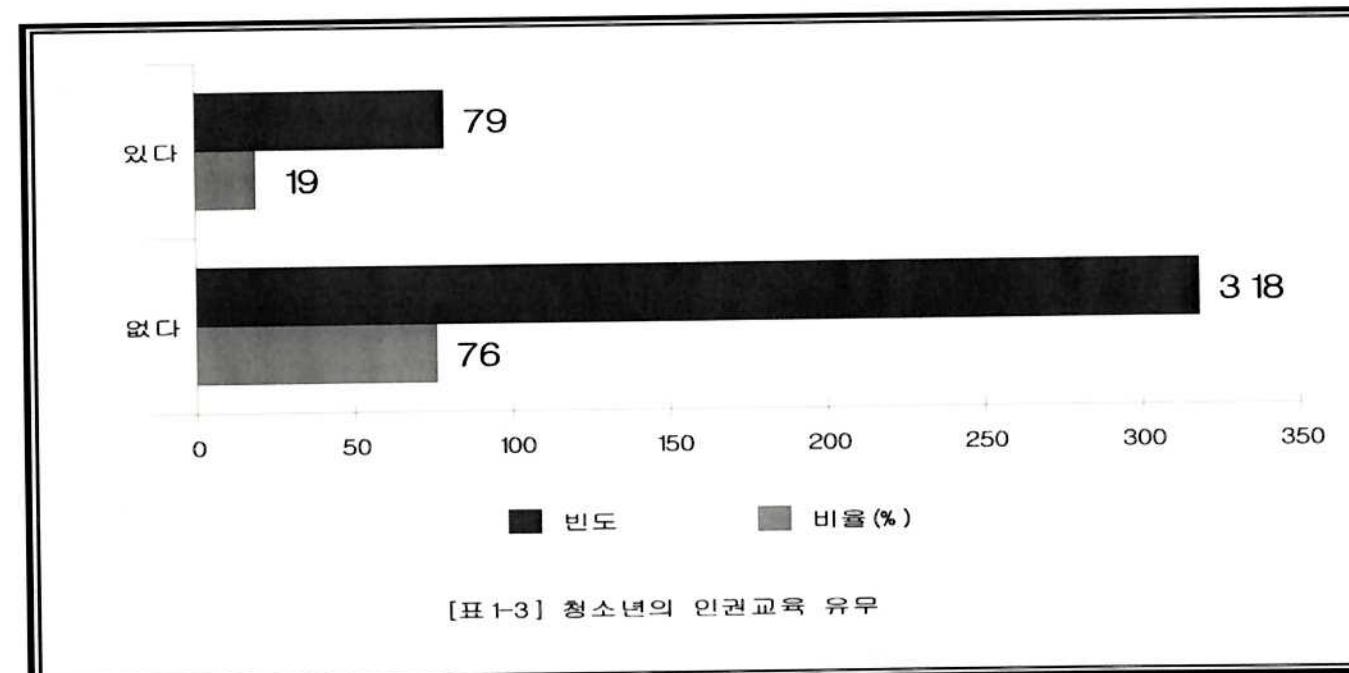
청소년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된 원인의 배경은 입시위주의 교육현황과 기성세대와의 갈등에 있다고 생각된다.



### ③ 청소년인권교육 유/무

인권교육을 받아본 청소년이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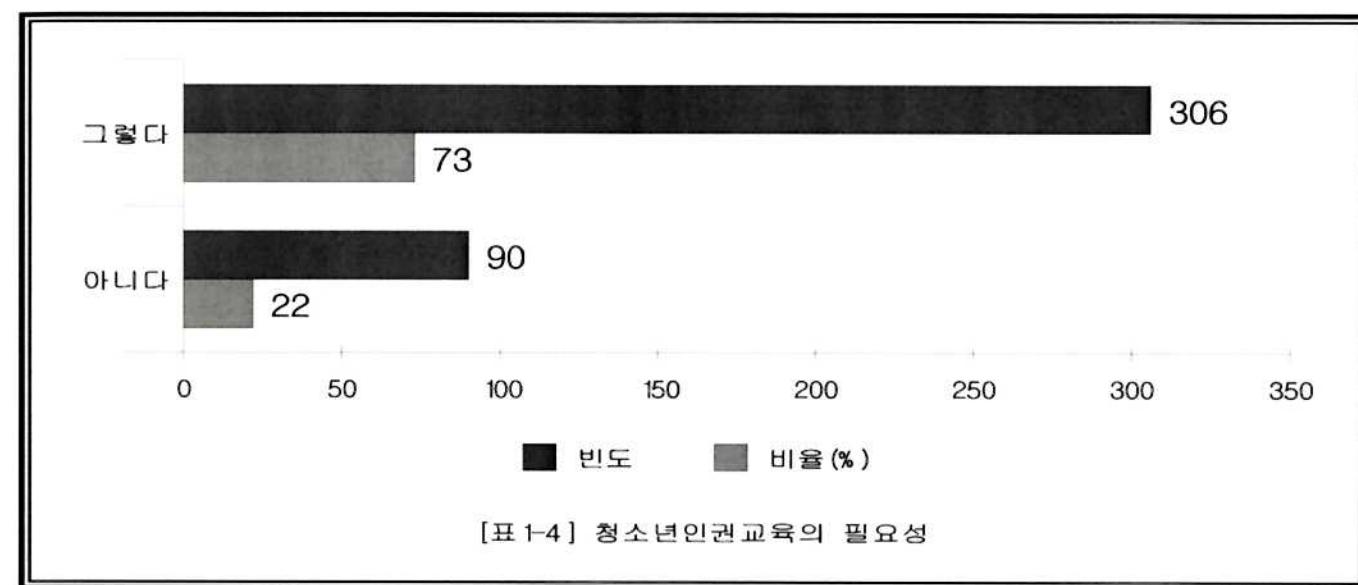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해서 청소년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의 인권침해일 것이다.



### ④ 청소년인권교육의 필요성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청소년들이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인권교육이 다른 어떤 교육보다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 II. 개인의 인권

### ① 남자 혹은 여자인 것으로 인해 침해 받지 않을 권리

내 용	항 목		빈도	비율
	침해 유무	있다		
남자 혹은 여자인 것으로 인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있다	128	31	
	없다	155	37	
	매우중요	109	26	
	중요	81	19	
	보통	36	9	
	중요하지 않음	3	1	
	매우중요하지않음	5	1	

☞ 의외로 성차별을 받아본 청소년들이 30%나 있었다. 대부분의(90%이상) 청소년들이 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해주었다.

현대사회에도 남.녀 차이로 인한 제약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유교사상에 입각한 남존여비의 사상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② 외모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내용	항목	빈도	비율(%)
외모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60
		없다	234
	중요도	매우중요	141
		중요	107
		보통	73
		중요하지 않음	50
		매우중요하지않음	15
			4

요즘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도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아본적이 40% 가까이 되었다.

### ③ 타인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을 권리

내용	항목	빈도	비율(%)
다른 사람의 의도로 이끌리거나 간섭받지 않고 내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지킬수 있는 권리	침해 유무	있다	217
		없다	175
	중요도	매우중요	133
		중요	132
		보통	72
		중요하지 않음	37
		매우중요하지않음	12
			3

청소년들이 침해받은 권리중에 타인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을 권리부분이 2번째로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지킬 수 없고, 타인의 의도로 인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권리의 침해이다.

청소년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 ④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행동할 권리

내용	항목	빈도	비율(%)
내 양심에 비추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99
		없다	191
	중요도	매우중요	165
		중요	117
		보통	76
		중요하지 않음	17
		매우중요하지않음	10
			2

50% 정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침해를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장 많이 침해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50%이상의 청소년들이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2명중에 1명꼴로 자신의 의지를 부모님이나 선생님, 기성세대로 인해 자신의 양심과 관계없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청소년들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닐까..

청소년기란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기로에 서있다.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과연 이런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란 무엇일까? 어른들이 보는 청소년들의 위치는? 어떤상황에서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되어야 하고, 어떤상황에서는 어른들의 말 만들어야 하는 아이가 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주체적으로 미래를 짊어질 대목으로 커갈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 ⑤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

내용	항목	빈도	비율(%)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침해 유무	있다	230
		없다	163
	중요도	매우중요	168
		중요	113
		보통	83
		중요하지 않음	19
		매우중요하지않음	5
			1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이 낳은 병폐를 이 결과가 매우 잘 드러내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침해받고 있는 권리는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로 나타났다.

2차 성장이 나타나면서부터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변화하는 시기에 자신의 여가시간조차 자유롭게 쓸 수 없고, 학교에서 끝나면 집에 가서 자기 바쁜 청소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또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시간이 주어져도 그러한 문화에 익숙치 않을 것이며 청소년들이 가서 쉬고 즐길만한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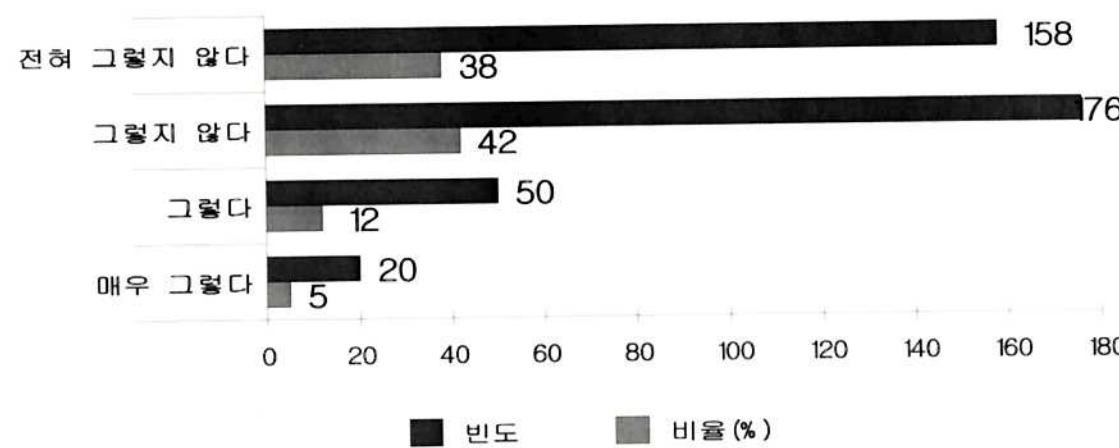
#### ⑥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나 폭행, 폭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내용	항목	빈도	비율(%)
신체적·정신적 학대, 폭행이나 폭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51 36
		없다	239 57
	중요도	매우중요	213 51
		중요	94 23
		보통	56 13
		중요하지 않음	15 4
		매우중요하지않음	7 2

40% 가까운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폭행, 폭언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10명중의 4명정도의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적이 있다는 것이다. 40%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교사든, 부모님이든, 또래 친구들에게든 우리 청소년들은 폭행이나 폭언을 받아서는 않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 ⑦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 협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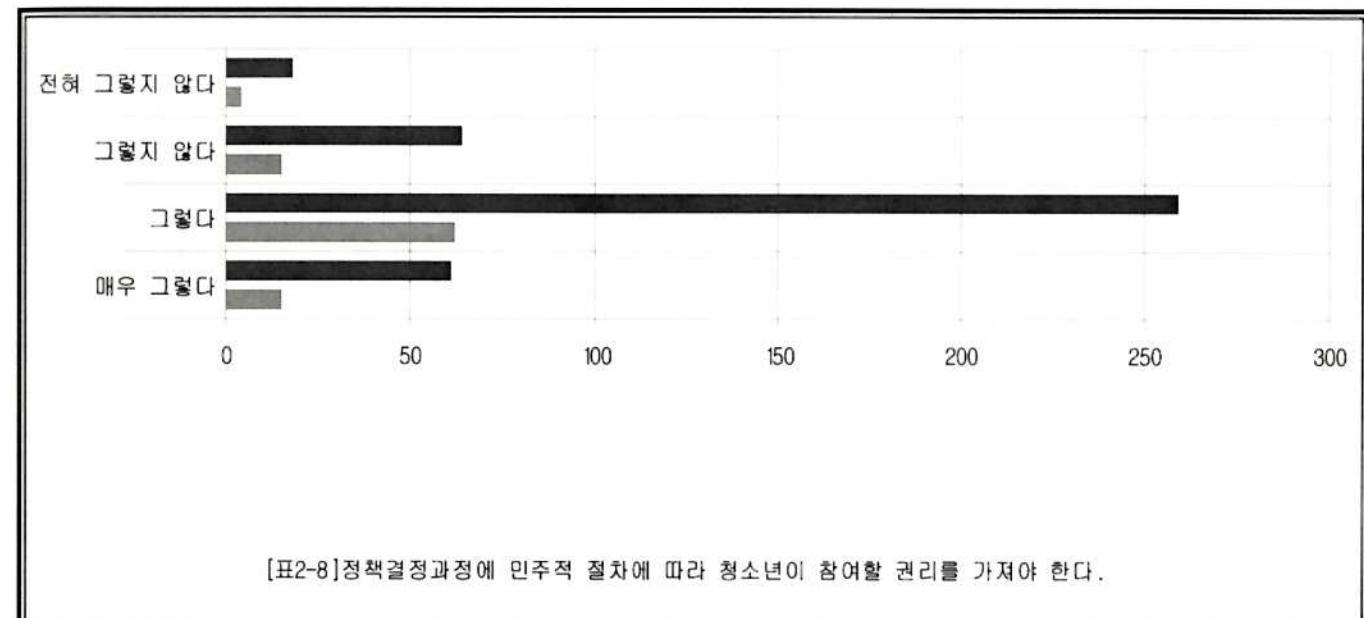
80% 이상의 청소년들의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협약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인권교육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표2-7]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 협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 ⑧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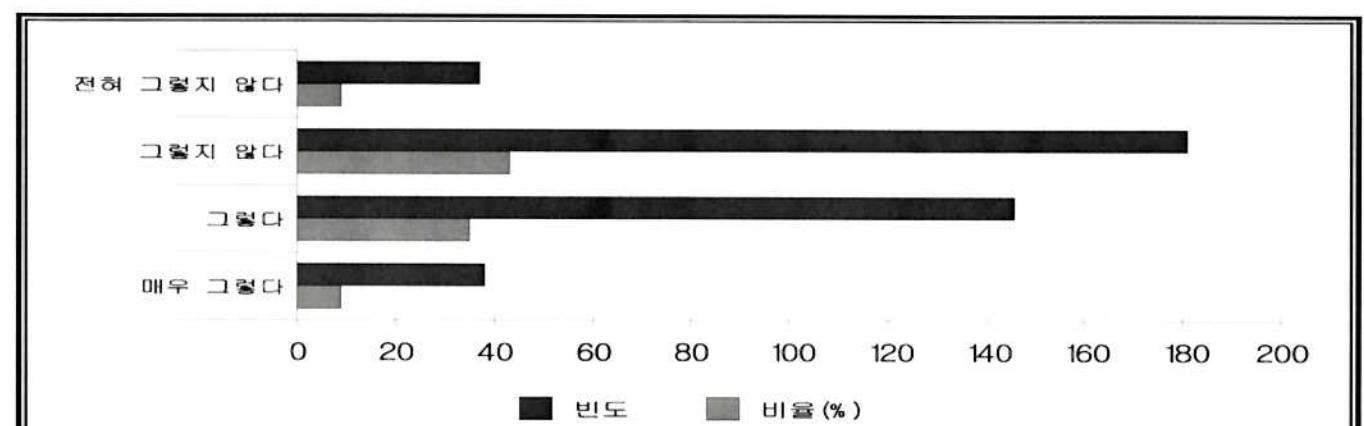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 또한 스스로 정치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대답해 주었다.



[표2-8]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⑨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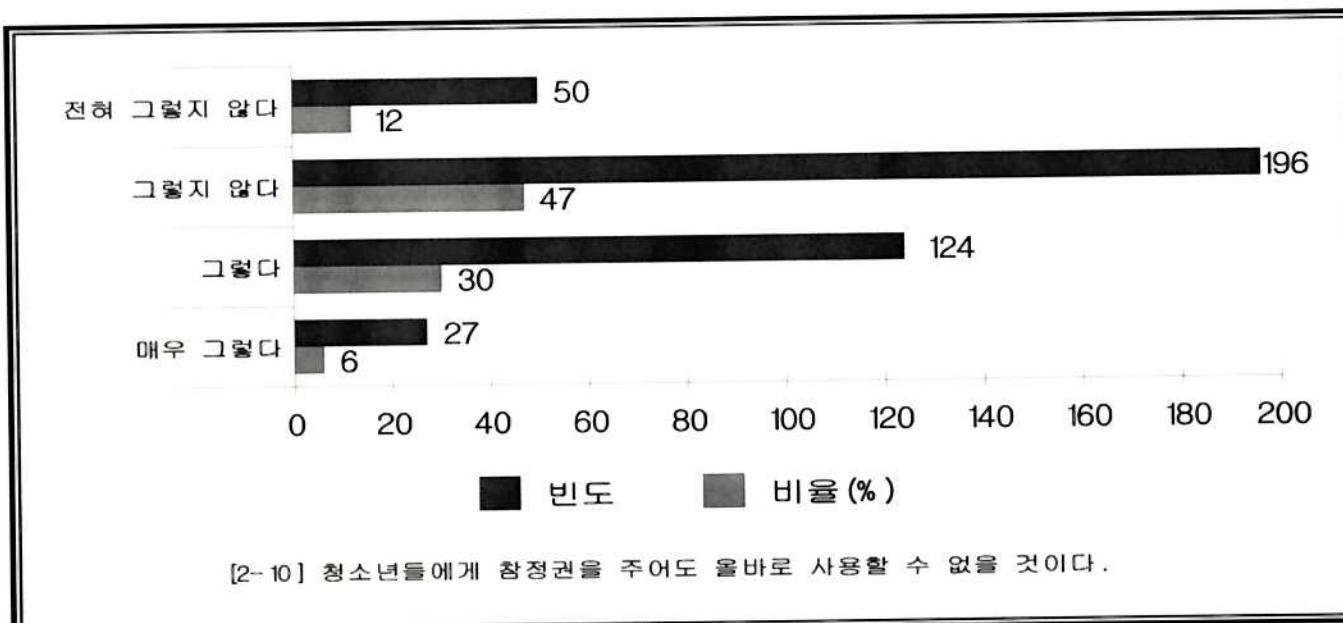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체벌문화에 아주 익숙하다. 체벌과 가장 밀접한 것도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일 것이다. 체벌이 필요하다고 40% 가까운 청소년들이 대답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체벌의 불합리함을 생각하기 보다 무조건 맞아야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에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체벌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의 체벌문화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표2-9]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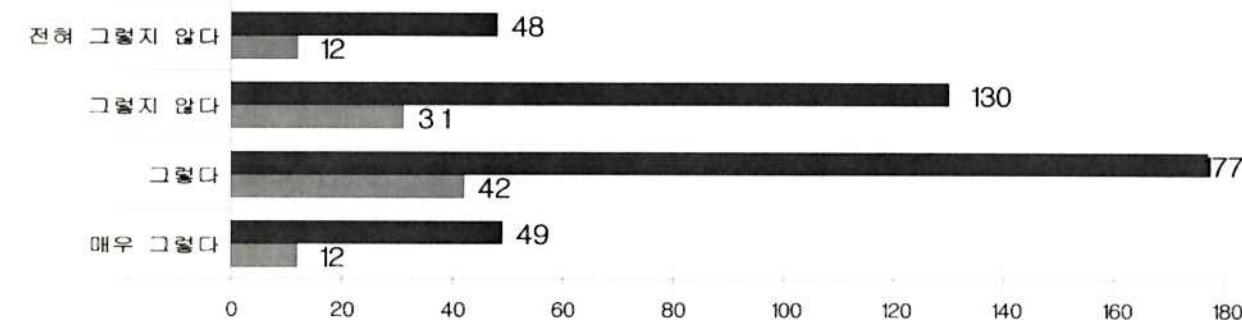
## ⑩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주어도 올바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청소년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나 참정권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였다. 60%의 청소년들이 올바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어떤 책임소재에서 청소년들이 아직 주체적이지 못하며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청소년들의 삶속에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훈련들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주체적인 삶에 대해 훈련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후에 아무런 사전교육과 지식없이 선거권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도 의문이다. 진정으로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청소년기때부터 자신의 삶의 책임지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 ⑪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들이 현재 사회에서 느끼는 청소년인권의 체감도를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60%나 되었다. 사회에서는 늘 청소년들에게 미성숙한 존재로 부모님과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고 할 뿐 우리의 권리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표2-11]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 III. 가정에서의 청소년인권

전반적으로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인권은 많이 침해받고 있었으나 내 진로를 내가 결정할 권리를 가장 많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40%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아직도 부모님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매우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선호하는 부모님의 인식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이 정말 원하고 잘하는 것을 진로로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밖에 다른 문항에서는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집안의 중요한 결정시 나의 의견을 말하고 받아들여줄 권리

내 용	항 목		빈도	비율(%)
	침해	유무		
부모님이 결정을 내릴 때 내 의견을 말하고 또 부모님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권리	있다		139	33
	없다		147	35
	매우중요		154	37
	중요		72	17
	보통		29	7
	중요하지 않음		3	1
	매우중요 하지않음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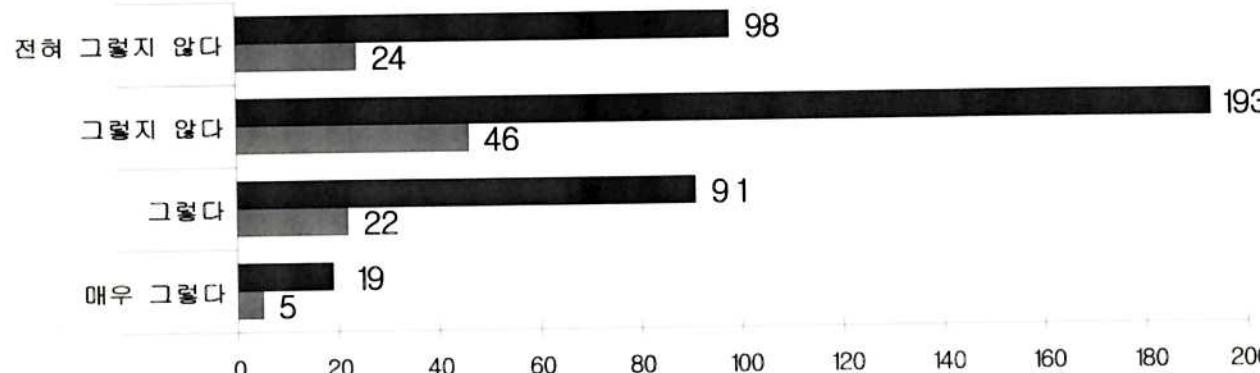
② 내 의견을 존중받을수 있는 권리

내용	항목	빈도	비율(%)
부모님의 이혼이나 가정생활의 큰 변화가 있을 때 내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25
		없다	268
	중요도	매우중요	175
		중요	113
		보통	60
		중요하지 않음	30
		매우중요하지않음	9

③ 자신의 진로는 자신이 결정할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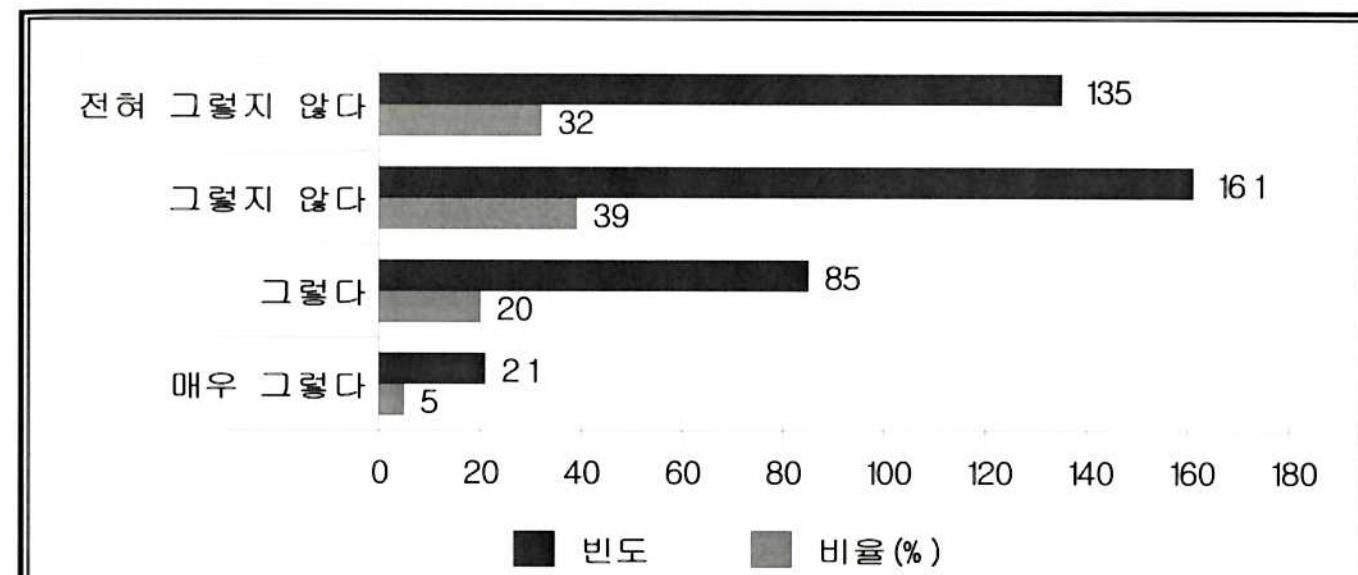
내용	항목	빈도	비율(%)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59
		없다	231
	중요도	매우중요	174
		중요	105
		보통	76
		중요하지 않음	23
		매우중요하지않음	8

④ 나의 부모는 나를 비하하는 말을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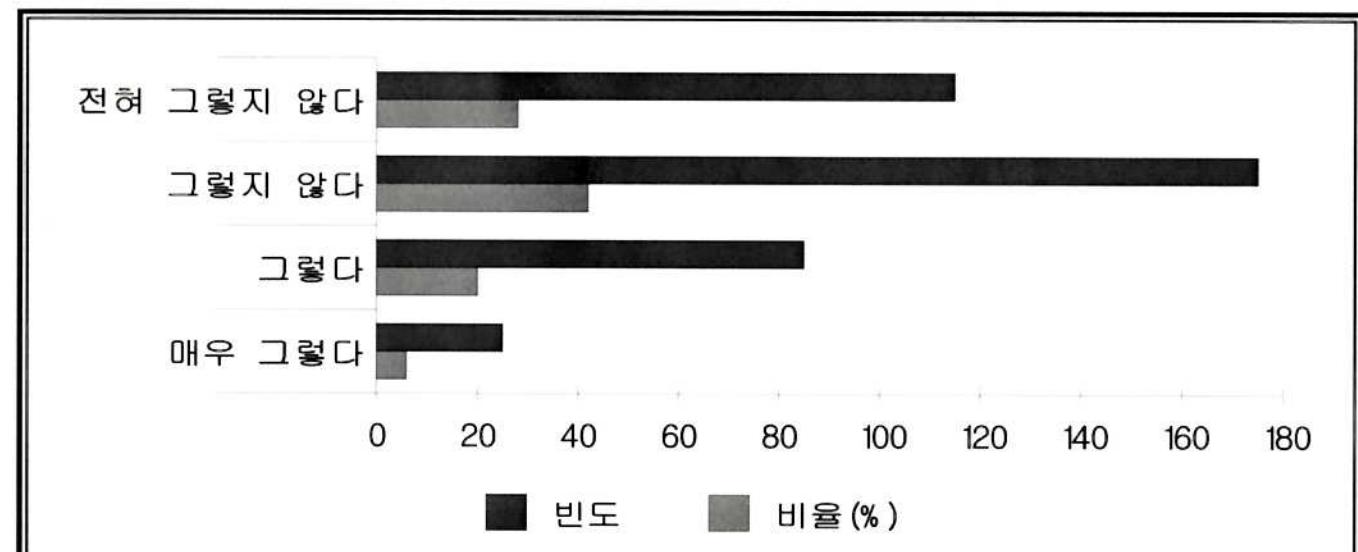
[표3-4] 나의 부모는 나를 비하하는 말을 하신다.

⑤ 가정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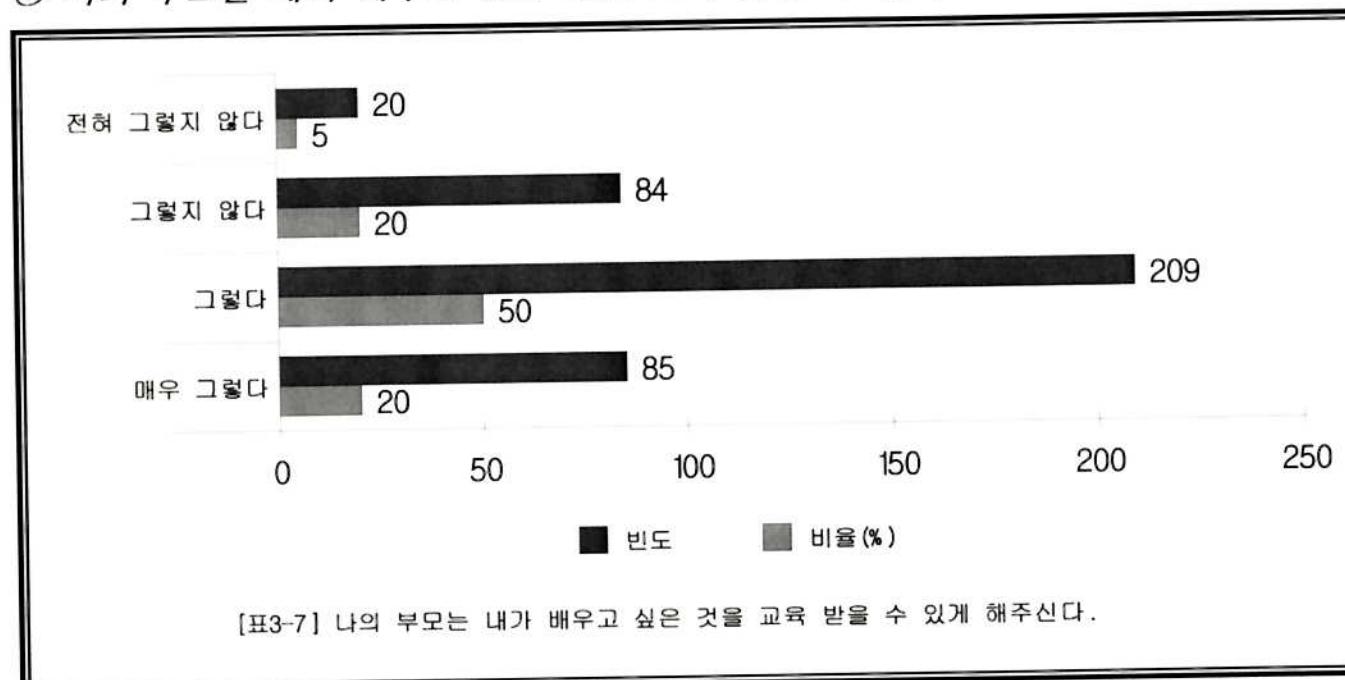
[표3-5] 가정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⑥ 다른 형제, 자매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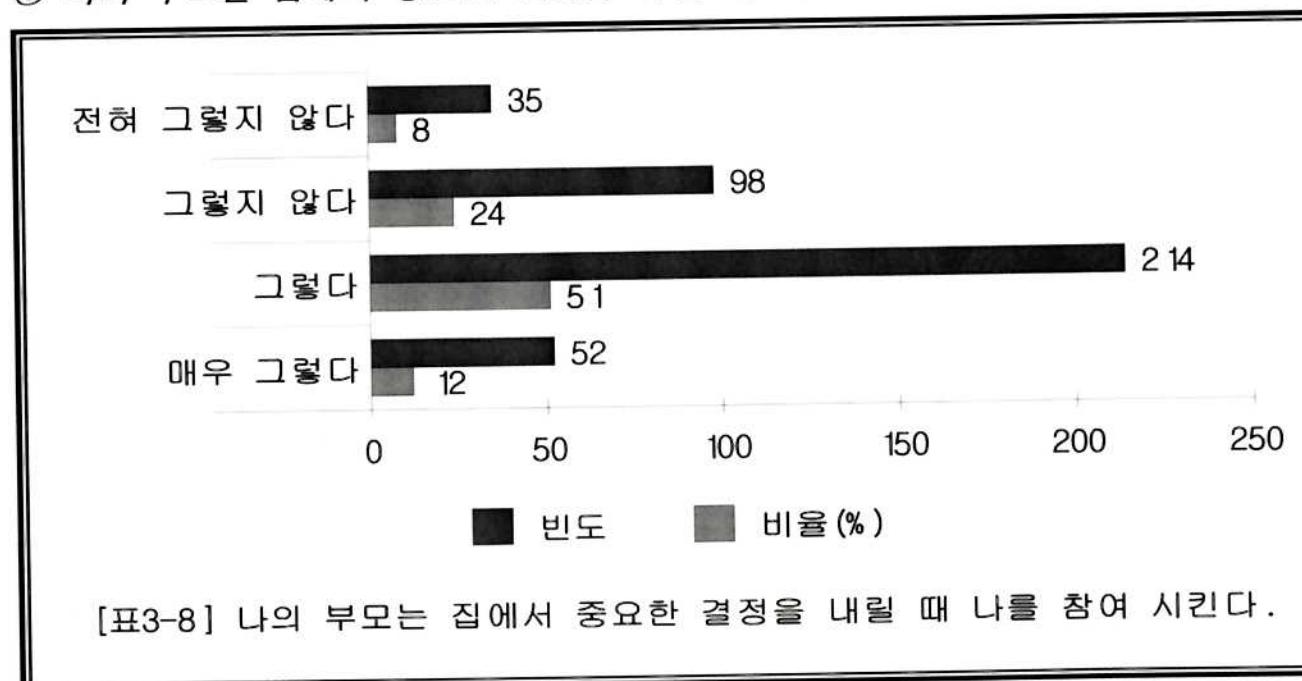


[표3-6] 다른 형제, 자매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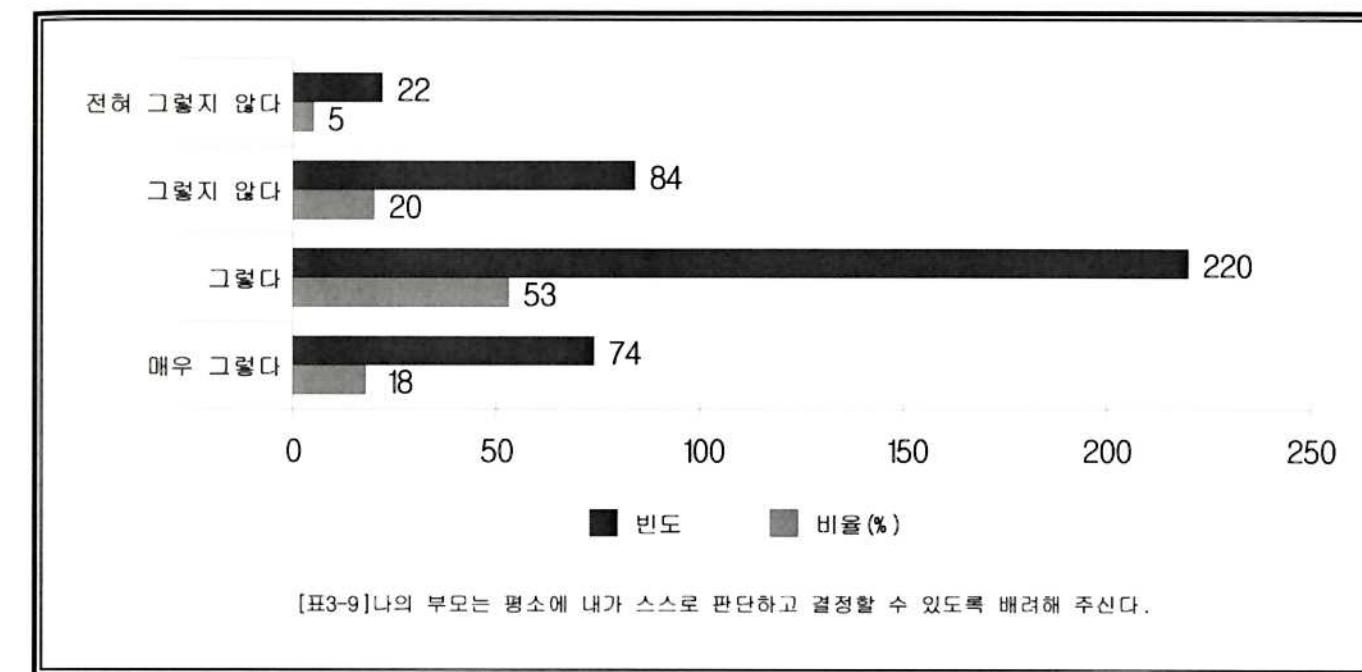
⑦ 나의 부모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교육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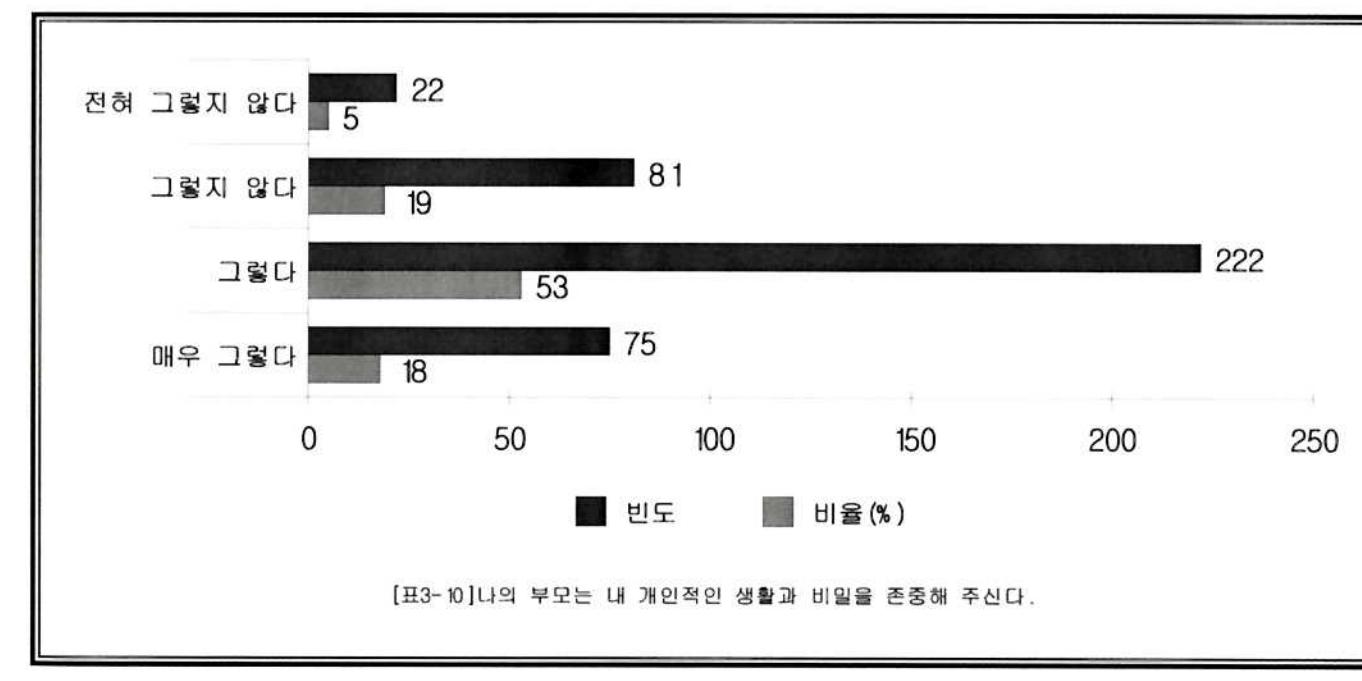
⑧ 나의 부모는 집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를 참여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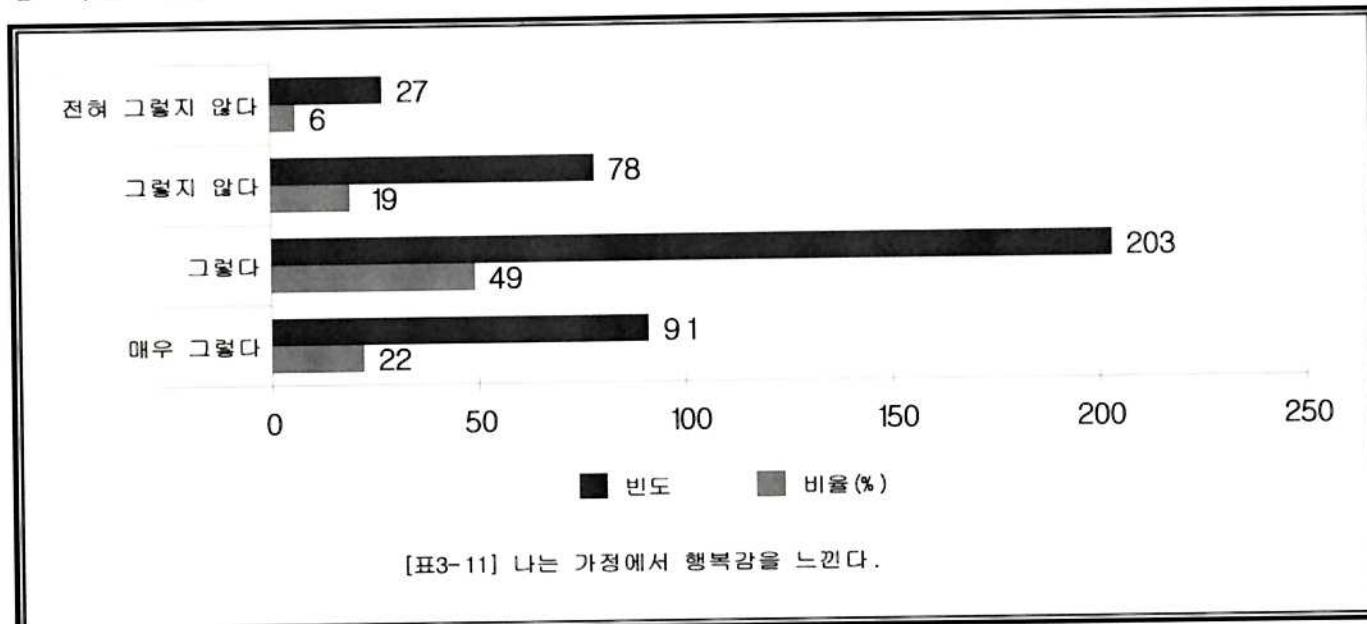
⑨ 나의 부모는 평소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



⑩ 나의 부모는 내 개인적인 생활과 비밀을 존중해 주신다.



### ⑪ 나는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 IV. 학교에서의 인권

### ① 교사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내용	항목		빈도	비율(%)
	침해	유무		
교사에게 위협이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있다		127	30
	침해 없다		161	39
	유무 매우 중요		161	39
	유무 중요		80	19
	유무 보통		22	5
	유무 중요하지 않음		1	0
	유무 매우 중요하지 않음		2	0

약 30%의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교사에게 폭력을 당한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아직도 학교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②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내용	항목	빈도	비율(%)
다른 학생으로부터 위협이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있다	116	28
	침해 없다	276	66
	유무 매우 중요	202	48
	유무 중요	103	25
	유무 보통	48	12
	유무 중요하지 않음	23	6
	유무 매우 중요하지 않음	9	2

또한 다른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이 30%나 되었다. 얼마전에 있었던 학교폭력사건을 드러내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폭력성이나 폭력문화가 학교내의 청소년들에게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슬픈 현실이다.

### ③ 휴식 및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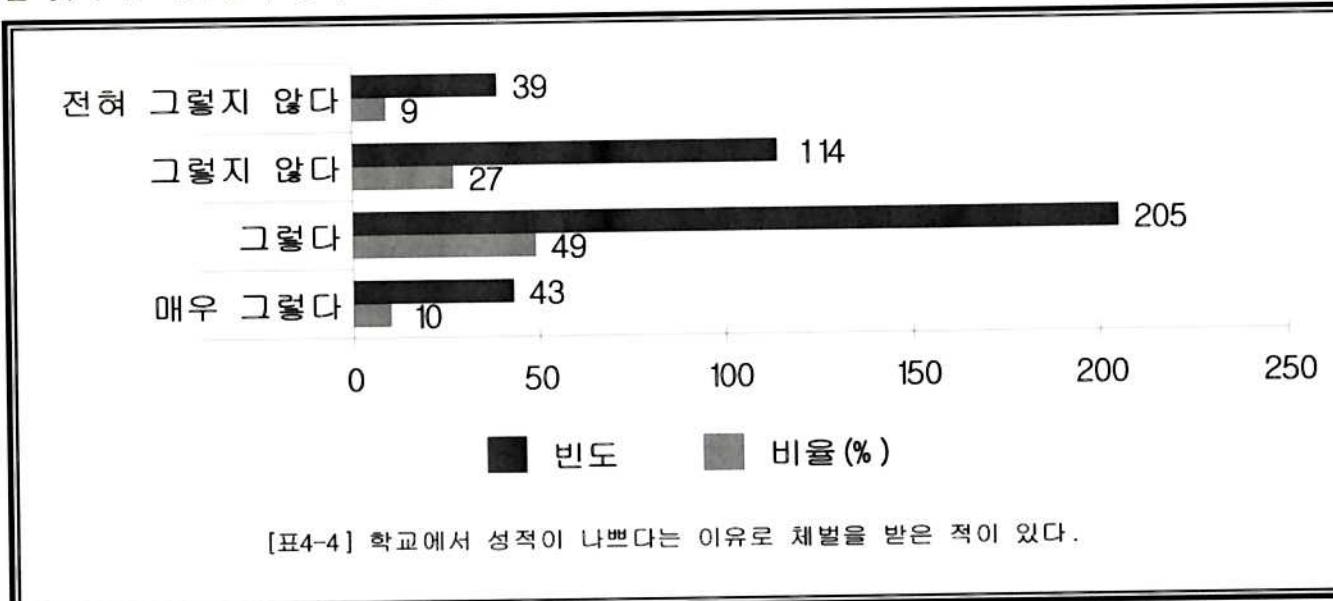
내용	항목	빈도	비율(%)
휴식 및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침해 있다	194	47
	침해 없다	195	47
	유무 매우 중요	201	48
	유무 중요	100	24
	유무 보통	58	14
	유무 중요하지 않음	19	5
	유무 매우 중요하지 않음	6	1

약 50%의 학생이(2명중에 1명)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생존권과 마찬가지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요즘은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산업과 문화가 급격히 발달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가생활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헌데 정작 학교생활과 학업으로 인해 지친 청소년들에게 휴식과 여가의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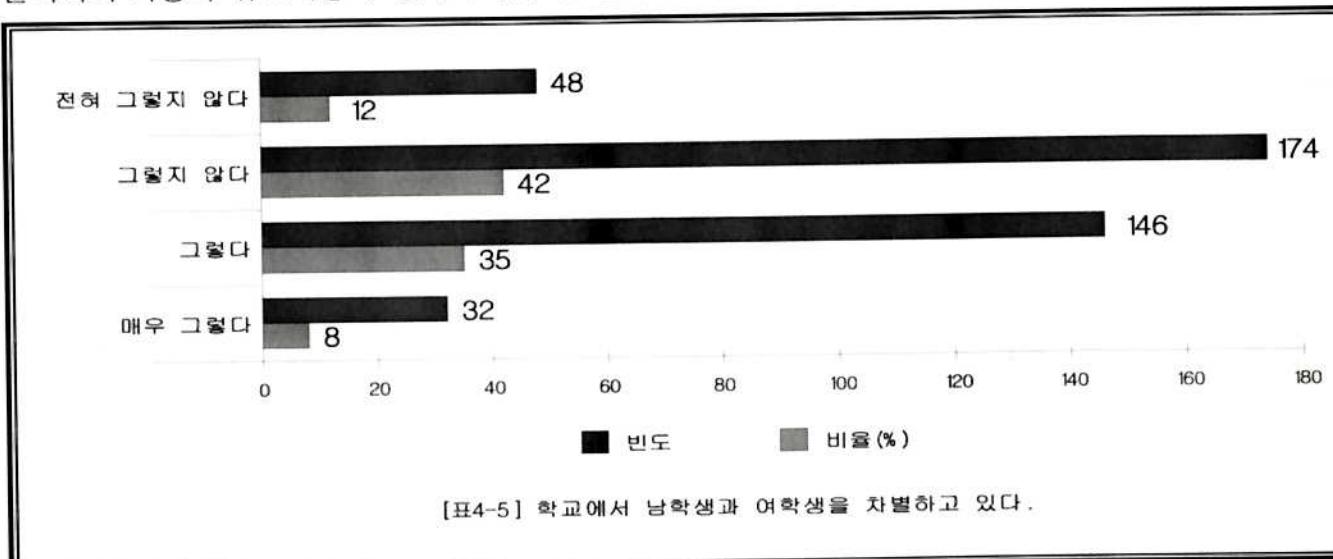
#### ④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거의 60%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단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단지...성적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체벌을 받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 또한 심각하게 훼를 것이다. 하루빨리 성적으로 청소년을 평가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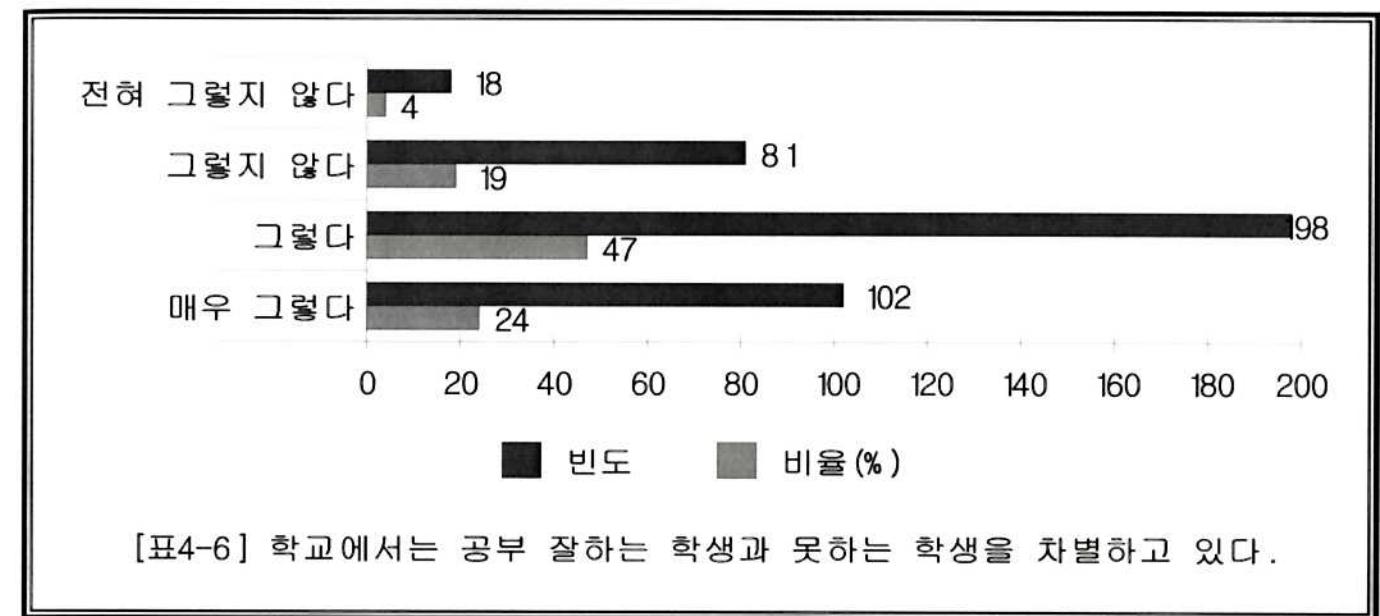
#### ⑤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40%가 넘는 청소년들이 남, 여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교육되어져야 할 양성평등의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학교는 그래도 남존여비의 사상과 유교사상이 팽배하다는 현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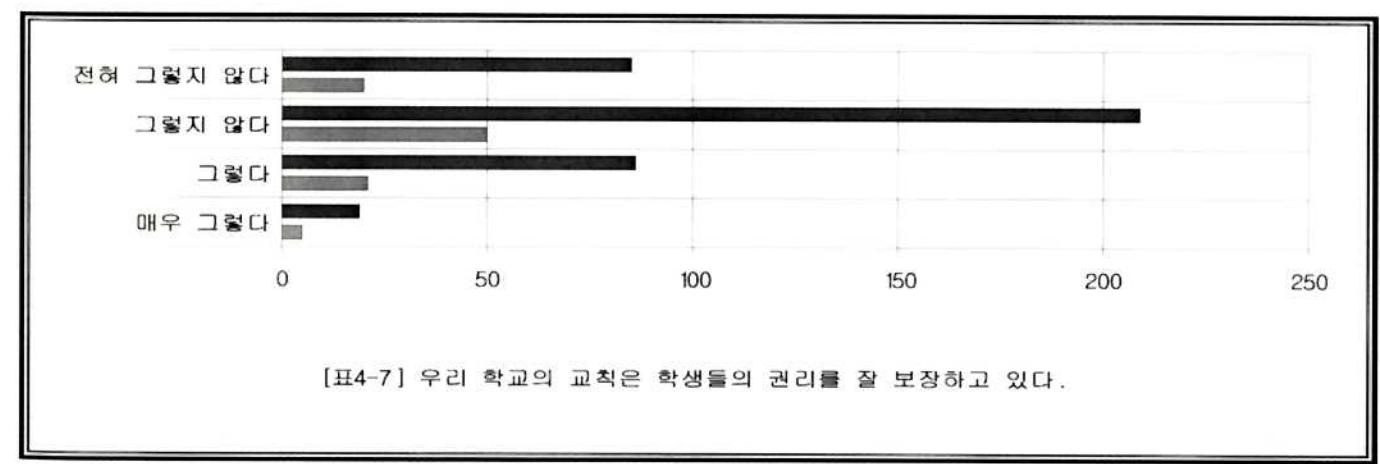
#### ⑥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7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적으로 차별하고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지 성적만으로 체벌을 받고 성적으로 인해 차별받는 학교의 실상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학교실태속에서 청소년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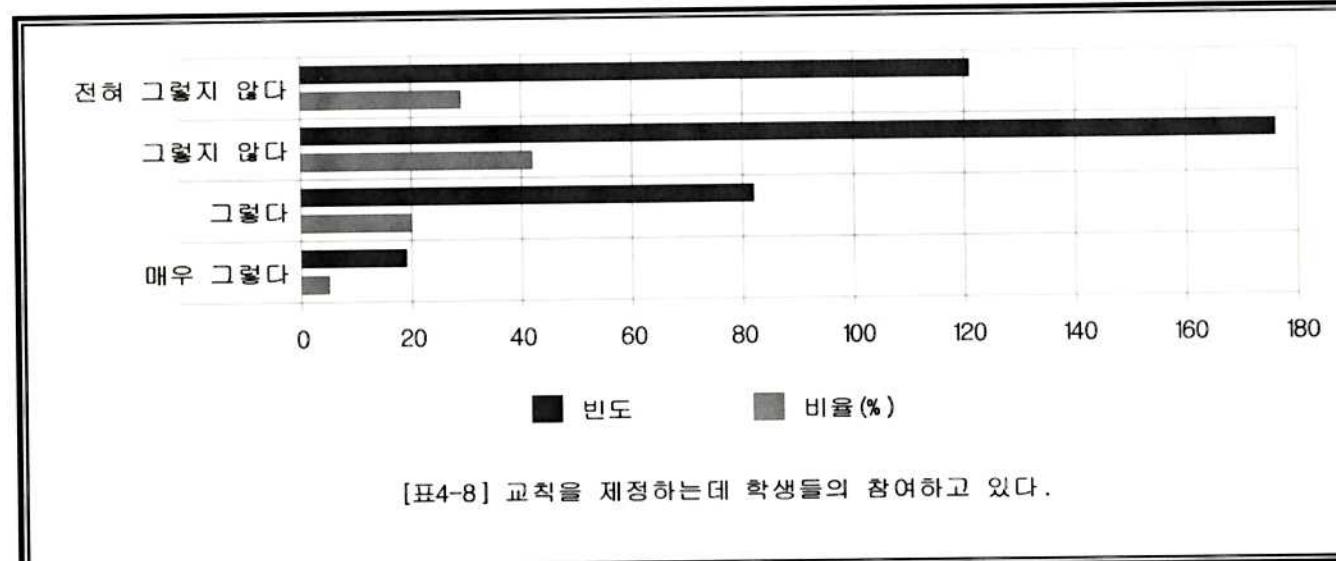
#### ⑦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학교의 교칙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지는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부터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선생님인가? 학부모인가? 학생인가? 누구일까? 학교의 교칙은..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 져야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데 70%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의 교칙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 줄 것이며, 교칙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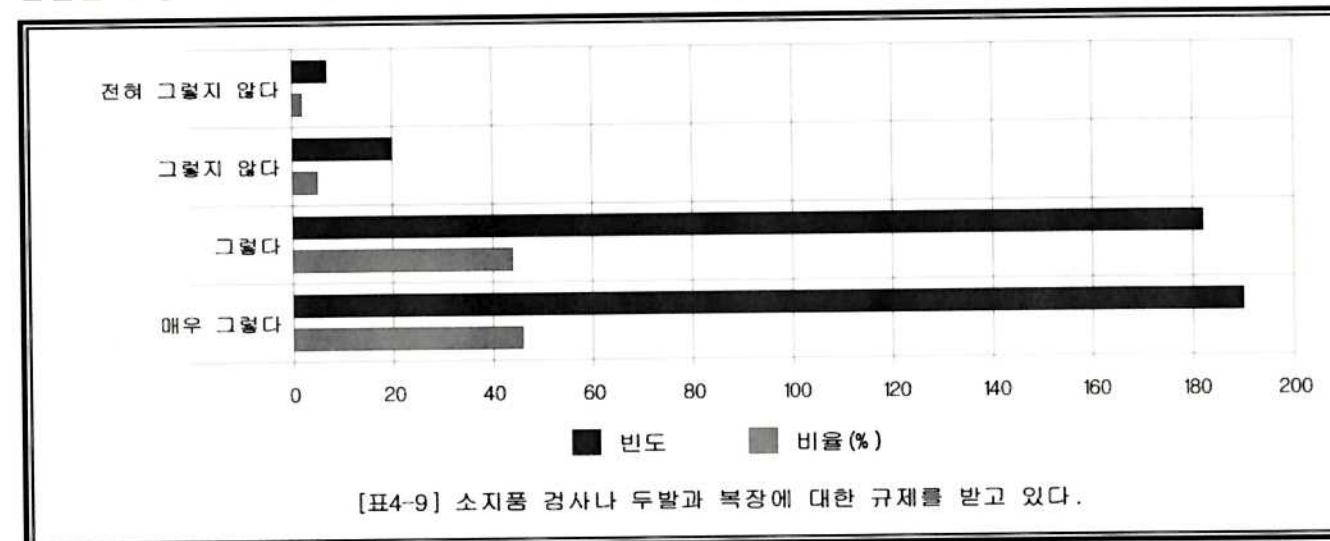
### ⑧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의 참여하고 있다

교칙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듯 제정하는데 학생들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70%이상의 청소년들이 교칙을 제정하는데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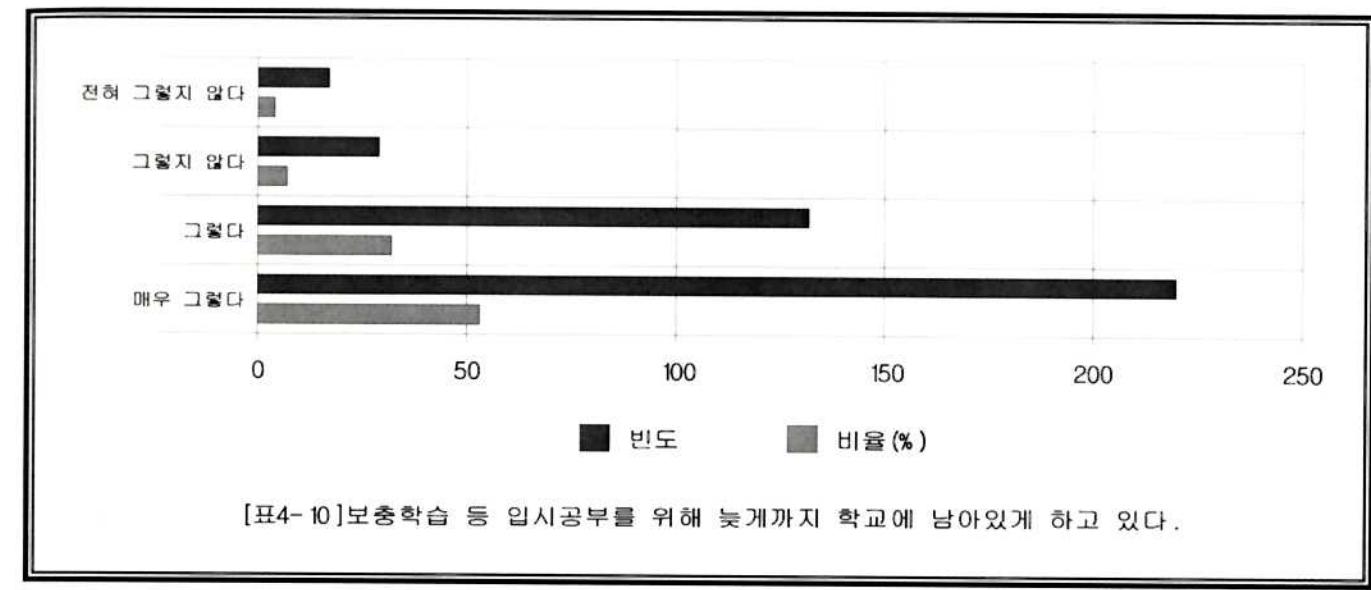
### ⑨ 소지품 검사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90% 이상의 청소년들이(10명중에 9명) 학교에서 소지품검사나 두발,복장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복장이나 두발에 대한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특히 두발의 경우는 신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면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심한 규제는 필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⑩ 보충학습 등 입시공부를 위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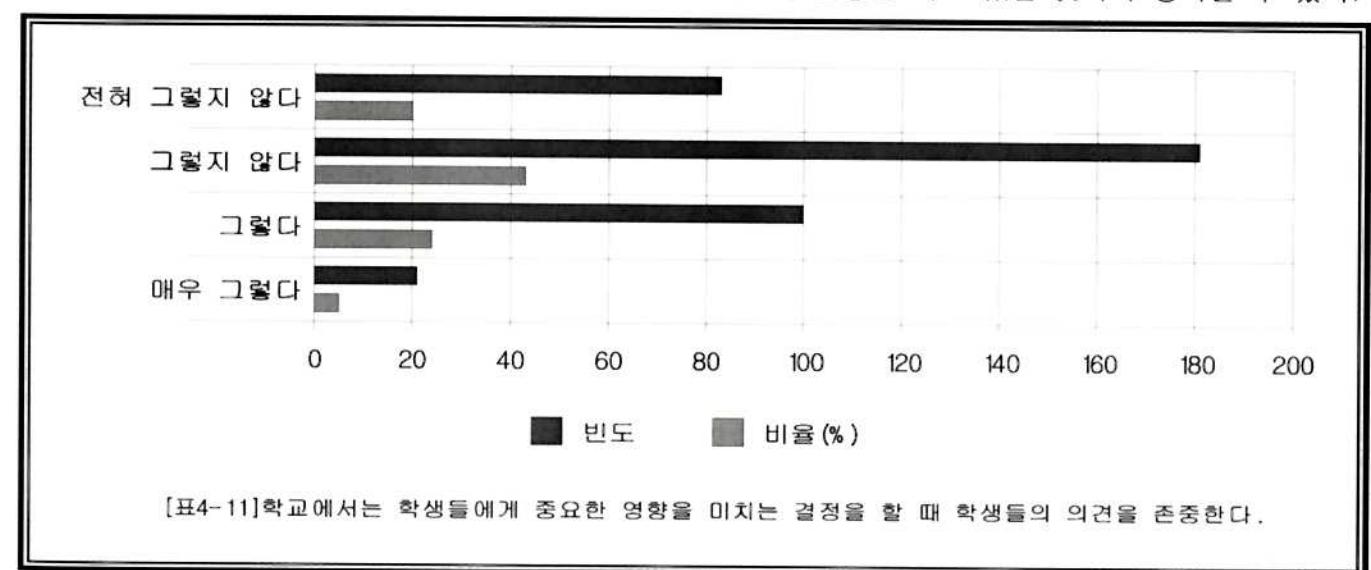
현재 야간자율학습이 있어 학생들은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하며 방학기간중에도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라고 이야기 할만큼 학교에서는 무조건 모든 학생들에게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 ⑪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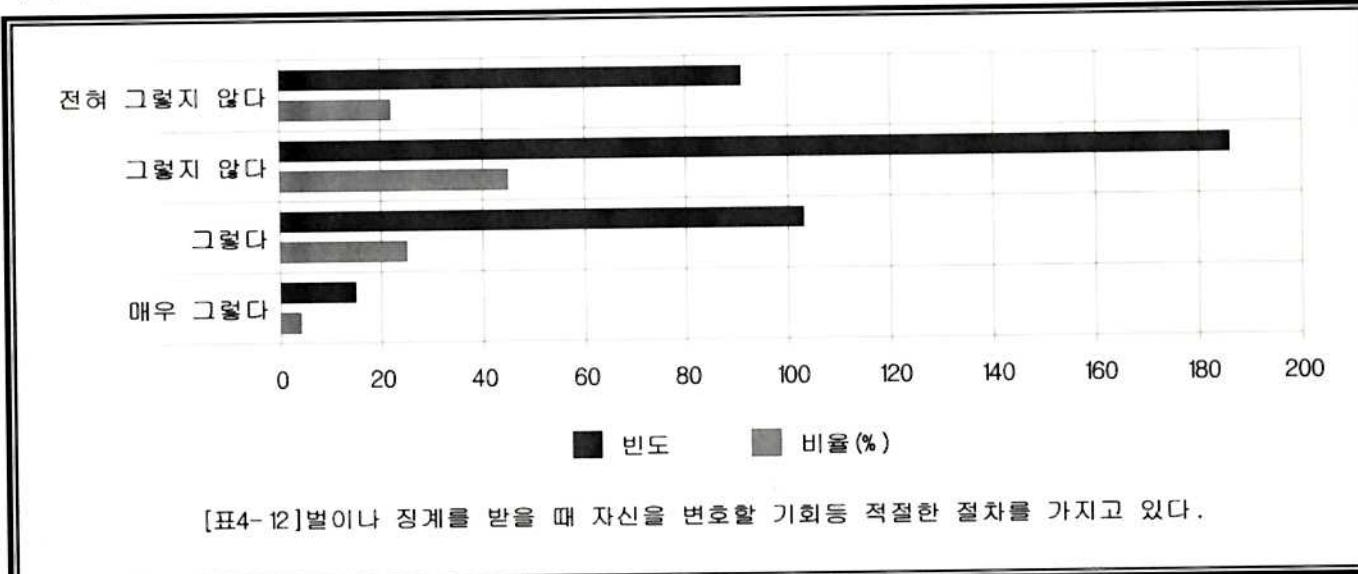
이 문항 또한 교칙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교칙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학생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한 채 학교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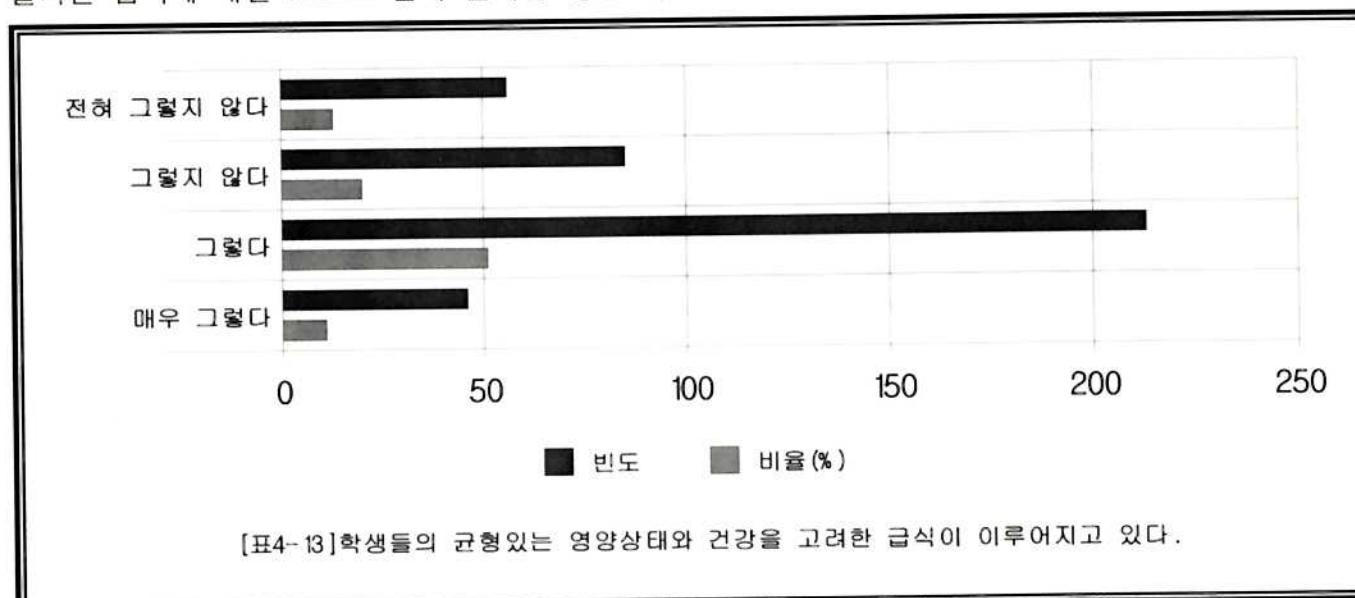
#### ⑫ 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약 70%의 학생들이 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할 수 없고 적절한 절차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에 의해 학생들에게 체벌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의 사정과 학생개인의 신상과 특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무조건적인 체벌이 가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⑬ 학생들의 균형있는 영양상태와 건강을 고려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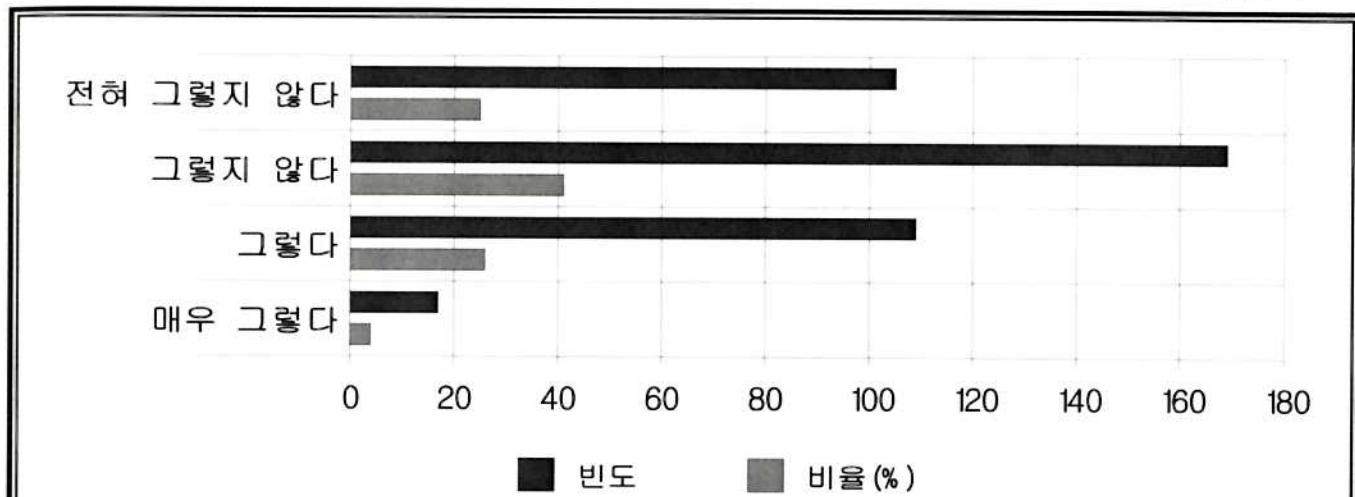
얼마전 급식에 대한 보도로 인해 현재는 많은 학교들의 급식이 나아지고 있음을 알수있다.



#### ⑭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이다. 이런 학교안에서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현대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여실히 드러내준다.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학교, 더불어 가는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 학교, 청소년의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4-14]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 V. 사회에서의 인권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권지수는 어느정도일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침해를 받은 권리로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꼽았다. 약 40%의 청소년들이 응답해주었다.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신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것이었다. 또한 내 의견과 의지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런 응답외에도 청소년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많은 청소년들이 응답해주었다. 청소년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시간도 주어지지 않을뿐더러 그런 여가시간을 소요할 문화공간조차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또 한번 지적해 주고 있다. 주 5일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던 토요일 학교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산이 나하던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막상 그 토요일이 되자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어느 거리에도 청소년들이 갈만한 공간이 없어 여기저기 방황하다 결국 노래방이나 피씨방에 들렸다가 집에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째 주5일제가 되기도 전에 아이들은 하나같이 차라리 학교에 가는게 낫다고 말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청소년들이 즐기고 편하게 갈만한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청소년 또한 이 사회의 주체이고, 시민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는 도와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봐주어야 할 것이다.

#### 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위험한 곳/ 유해한 곳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

내용	항 목		빈도	비율
	침해 유무	있다 없다	59 225	14 54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위험한 곳 유해한 곳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	중 요 도	매우중요	115	28
		중요	83	20
		보통	36	9
		중요하지 않음	14	3
		매우중요 하지않음	1	0

#### ②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내용	항 목		빈도	비율
	침해 유무	있다 없다	128 260	39 27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직장 및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 요 도	매우중요	163	39
		중요	114	27
		보통	65	16
		중요하지 않음	25	6
		매우중요 하지않음	13	3

#### ③ 투표권을 가질 권리

내용	항 목		빈도	비율
	침해 유무	있다 없다	107 281	26 67
시민으로서 대표를 선출하고 투표권을 가질 권리	중 요 도	매우중요	115	28
		중요	109	26
		보통	107	26
		중요하지 않음	40	10
		매우중요 하지않음	10	2

#### ④ 구타나 폭력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

내용	항 목		빈도	비율
	침해 유무	있다 없다	129 260	31 62
내가 잘못했을 경우, 처벌방법으로 구타나 폭력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중 요 도	매우중요	168	40
		중요	112	27
		보통	73	18
		중요하지 않음	23	6
		매우중요 하지않음	7	2

#### ⑤ 청소년으로서 성적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내용	항 목		빈도	비율
	침해 유무	있다 없다	109 280	26 67
청소년으로서 성적학대로부터 보호나 도움을 받을 권리	중 요 도	매우중요	199	48
		중요	98	24
		보통	59	14
		중요하지 않음	21	5
		매우중요 하지않음	9	2

**⑥ 청소년으로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내용	항목	빈도	비율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15
	없다	273	
	중 요 도	매우중요	156
		중요	126
		보통	84
		중요하지 않음	13
		매우중요 하지않음	8

**⑨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권리**

내용	항목	빈도	비율
또래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52
	없다	237	
	중 요 도	매우중요	164
		중요	133
		보통	65
		중요하지 않음	20
		매우중요 하지않음	4

**⑦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

내용	항 목	빈도	비율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65
	없다	224	
	중 요 도	매우중요	211
		중요	108
		보통	42
		중요하지 않음	19
		매우중요 하지않음	6

**⑩ 차별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

내용	항 목	빈도	비율
차별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67
	없다	222	
	중 요 도	매우중요	213
		중요	98
		보통	51
		중요하지 않음	18
		매우중요 하지않음	6

**⑧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

내용	항 목	빈도	비율
자신의 사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72
	없다	217	
	중 요 도	매우중요	185
		중요	116
		보통	61
		중요하지 않음	19
		매우중요 하지않음	5

**⑪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내용	항 목	빈도	비율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54
	없다	236	
	중 요 도	매우중요	201
		중요	112
		보통	47
		중요하지 않음	17
		매우중요 하지않음	10

**⑫ 청소년노동권**

내 용	항 목	빈도	비율
부당하게 시키는 일이나 유해한 노동 및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08
	없다	282	
	중 요 도	매우중요	180
		중요	122
		보통	54
		중요하지 않음	25
		매우중요 하지않음	7
		하지않음	2

**⑬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존중받고 침해 받지 않을 권리**

내 용	항 목	빈도	비율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존중받고 침해 받지 않을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53
	없다	235	
	중 요 도	매우중요	173
		중요	122
		보통	60
		중요하지 않음	18
		매우중요 하지않음	11
		하지않음	3

**⑭ 휴식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

내 용	항 목	빈도	비율
휴식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과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54
	없다	235	
	중 요 도	매우중요	155
		중요	122
		보통	74
		중요하지 않음	28
		매우중요 하지않음	9
		하지않음	2

**⑮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내 용	항 목	빈도	비율
자신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유무	있다	140
	없다	280	
	중 요 도	매우중요	204
		중요	11
		보통	48
		중요하지 않음	17
		매우중요 하지않음	6
		하지않음	1

## 일하는 청소년에게 권리는??

안병범 (용인고 2학년 / YMCA 인권기자단)

저는 지금부터 일하는 청소년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고 저희 청소년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급 3,100원이며, 일급 24,800원입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3000원 이상 주는 곳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시간당 2500원이 전부 였습니다. (작년도 최저임금은 2,840원이었습니다)그런다고 다른 대학생이나 일반인 보다 쉬운 일이나 적게 일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일을 합니다. 일을 더 열심히 했으면 더 했지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청소년이라고 무시당할까봐, 혹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덜 줄까봐, 무서워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을 때 알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

대학생은 45000원, 일반인은 55000원, 이에 비해 몇일동안 똑같이 일을 한 청소년인 저는 3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당하는 저의 경험담이었습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은 추위와 더위에 무감각하다 ?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청소년도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이며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 아는 동생이 일하는 주유소에서는 점점 추워지고 있는 이 겨울에도 밖에서 벌벌 떨어가며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온풍기가 있고 따뜻한 주유소 휴게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잔소리 때문이죠. 일을 좀 게을리 한다는 핑계로 잔소리를 하며 나갈 수 밖에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일을 조금도 게을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일하는 청소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하는 청소년도 추위와 더위를 느끼고 힘들고 지칠 땐 휴식시간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도 사람이니까요.

위와 같은 경험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청소년이 일 할 수 있는 곳은 알고 계십니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곳,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가 아니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주유소, 패

스트푸드점등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곳이 많다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단지 일하는 청소년이 고용주 보다 단지 어리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은 무시되어 져야만 할까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없는 청소년으로써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꼭 해두어야 할 이 세 가지 만큼은 꼭 실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 첫째, 부모님의 동의를 받습니다.

▶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둘째, 부모님의 동의서와 청소년이라는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제출하기

▶ 부모님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으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하고자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셋째, 근로계약서 쓰기

▶ 근로계약서란 어떤 일을, 몇 시간 동안,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일할 기간, 일할 장소, 해야 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할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받아야 할 돈(임금), 돈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알바를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예방하는 청소년들만이 일하는 청소년들, 즉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인격체이며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도 모르게 당연히 받아야 할 인권을 무시당한다면 과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한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 요즘 부쩍 늘고 있는 청소년아르바이트 ..

그만큼 늘어가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 무시 ..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실하는 청소년 NEWS!!

청소년 "일할 데가 없어요"

[세계일보 2005-08-08 20:36]



가정형편이 어려운 A군(18·고3)은 최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색하던 중 동네 비디오가게를 찾았으나 주인이 대뜸 나이를 물더니 “18살이라서 안된다”고 했다.

A군이 “성인물도 볼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안되느냐”고 따지자 주인은 “보는 것은 괜찮아도 일은 19살 이상이어야 한다. 걸리면 벌금만 몇천만원”이라며 손을 저었다. A군은 가끔 친구들과 이용했던 비디오방도 가봤지만 같은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A군은 “출입이나 이용은 가능한데 일은 안된다니 이해를 못하겠다”며 구직활동을 포기했다.

오랜 불황으로 청년(15~29세) 실업난이 심각하지만 15~19세 미만 청년(미성년자)의 경우 ‘나이만 따진’ 불합리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걸려 ‘취업장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 자질이나 업무숙련도, 경력 등이 아니라 단지 어리다고 취업전선에 뛰어들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고용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관련 법령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청소년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등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보호법(정보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에 나와 있는 비디오·만화 대여점, 비디오방, 게임장 등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그러나 음비법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해 18세 이상이면 정보법이 규정한 이들 고용 금지업소의 출입과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A군처럼 비디오방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성인영화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일은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다.

체인점 100곳을 둔 비디오대여업체 M사 관계자는 “일자리를 구하려 왔다가 나이 제한에 걸려 발길을 돌리는 학생들이 체인점마다 매달 5명 정도 되고, 이 때문에 구인난을 겪는 체인점도 많다”며 “청소년 연령을 일치시켜 혼란을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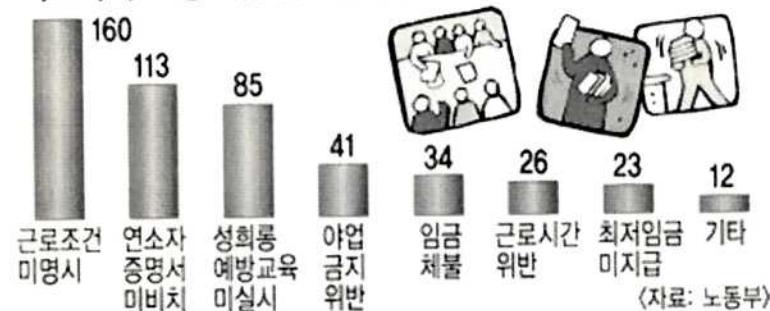
나이만 따지는 바람에 전체 업종이나 사업장이 미성년자 고용금지 구역으로 묶인 경우도 많다. 청보법 시행령은 숙박업 전체를 ‘19세 미만 고용금지업소’로 규정, 국제회의시설(2004년 10월 현재 4곳)이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409곳), 휴양콘도미니엄(“ 116곳) 등 유해하다고 볼 수 있는 업종까지 18세 이하는 고용이 금지돼 있다. 또 취급공정만 유해(有害)할 뿐인 ‘유독물 사용업’도 사업장 전체를 고용 금지업소로 규정, 근로자가 4만 7000여명인 현대자동차(주)를 비롯해 전국 1600여개인 유독물 사용업체에서 19세 미만자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역시 일부 공정과 장소에서만 유해한 유류(油類)·양조(醸造) 업무를 전 영역에 대해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직종’으로 규정함으로써 18세 미만자는 수많은 유류·양조업체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당 부처에 법률 개정 등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YMCA ‘일하는 청소년 지원센터’ 박민아 간사는 “일자리도 적은데 나이 위주의 법적 제약이 많아 미성년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이 때문에 성매매나 유흥업소 등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며 미성년자 취업 관련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찬밥 설움'

[국민일보 2005-03-18 18:14]

###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관계법 위반 사례별 적발 건수



“최저임금을 왜 안 주냐고 따졌더니, 싫으면 그만두라고 해 울며 겨자먹기로 일했어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374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만 15~17세)의 근로관계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3개 업소에서 494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60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곳이 113건(23%)에 달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85건), 근로시간 위반(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휴일 수당과 연장·야간 근로가산수당,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업소는 53곳으로 조사됐고 피해 청소년은 95명(805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대형 패스트푸드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불만 접수는 약간 줄었으나 소규모 분식점이나 소매점, 주유소 등에서 피해를 본 청소년들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노동부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일반음식점의 78%, 주유소의 69%가 근로관계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돈 빼먹는 업체 많다

[일다 2004-09-06 11:16]

시흥의 한 영세업체에서 방학기간에 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최모씨(여, 17세)의 말이다. 최씨는 “아침 8시부터 출근을 해서 청소, 설거지 등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 까지 일을 했는데 사장이 돈을 주지 않고 회사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학기 중에도 일을 했다는 이모씨(여, 18세)는 부천의 한 식당에서 시급 1천5백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 이씨는 “여기 일하는 애들 대부분이 나 같은 청소년들이고, 정말 돈이 없어서 용돈이라도 벌어 쓰자는 마음으로 일한다. 시급이 적기는 한데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일하는 김모씨(여, 17세)는 “첫 달 월급만 받고, 지난 2개월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했다. 개학을 했는데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 장시간 노동, 언어폭력, 체불임금 등에 시달려

일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례



“청소년들 알기를, 쓰다 버리는 일회용 컵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도 늘어가고 있다. 지난 8월 17일, 노동부는 패스트푸드업체 6개사(도미노피자, 롯데리아, KFC, 미스터피자, 파파이스, 피자헛)에 대한 7월 한 달 간 점검결과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연소자보호규정 위반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도미노피자는 463명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1억9천만원 대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KFC는 1만1천891명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11억6천만원대 금품을, 롯데리아는 2,346명의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면서 5억4천만원대 금품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롯데리아는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명시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미준수 등 2개 조항 1천 54건을 위반했으며, 파파이스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된 15세미만 취업금지 등 2개 조항 128건을, 피자헛 역시 2천654건을 위반했다.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방극철 근로감독관은 “노동부는 1년에 두 번씩 본사를 중심으로 하느 이와 같은 조사를 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체불금 품 지급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할 것임을 통보했다. 지난 2월 실시한 맥도날드와 버거킹에 대해 5억 정도를 추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사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편의점 카운터, 극장 내 위치한 식당가 서빙, 옷 가게 등의 상품판매, 전단지 돌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시급 1천500원에서 2천원 사이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특히 옷 가게, 식당 등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거나 심야근무를 강요 당하기도 한다. 월급도 체불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또한 업주와 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 성추행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방학기간 동안 노동하는 청소년들과 몇몇 대형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단속’ 성격의 적발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송방망이식 특별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10대들에게 위협적인 근로감독이 될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 법적 보호망 마련, 청소년 대상 교육 시급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개인의 소비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이 폭주한다.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업소 및 중소, 영세기업 사업주들이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업체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항목을 무시한 채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간편하게 이용해먹는다.

일하는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담당자 최무연씨는 “업주는 물론 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청소년은 자신이 어떤 비인간적인 혹은 불법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몇 시간 이상의 노동이 위법인지, 시급의 최저가는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01년, 2002년에 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청소년 소송인단을 꾸려, 청소년 노동착취 패스트푸드사 상대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노동부가 법 위반 적발 사례 발표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관계법령을 재정비하고, 상시적인 업체 감시시스템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학교의 주인은? 학교에 청소년은 없다?

전재호 (태성고 2학년)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닌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이란 상당히 긴 시간을 우리가 학교에 다닌다는 것과 동시에 머리가 길다고 혼나고, 시험을 못 봤다고 혼나고, 체벌도 12년 동안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 강도는 심해진다. 머리도 마음껏 못 기르고, 학생과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 나오기 어렵다는 우스갯소릴 하는 우리들.

과연 대한민국의 학교엔 학생의 인권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 법으로 존재 한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2장

#### 제12조 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제13조 1항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그러나 학교는 학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학교가 학생들을 교칙 준수를 바라듯 학생들도 학교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 내가 실제로 기사를 쓰면서 총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간단하게 1, 2, 3위만 말하자면, 먼저 32명의 학생들이 낸 두발자유가 1위를 했다. 머리가 길다고 자르라면 혼나는 것. 과연 도대체 어느 시대의 생각이란 말인가? 두발검사 자체가 위의 헌법에 위배 되는 일이 아닐까? 머리를 기르던 짧게 자르던 그건 개인의 자유다. 매달 규칙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비용 또한 아깝다. 이러는 데도 ‘학생답지 않다.’, ‘학업에 방해된다.’ 란 학교 측의 이유는 솔직히 우

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몇몇 친구들은 학교 측과 미용실과의 밀약이 있는 것이 아니냔 말이 나돌 정도다.

2위는 야자에 대한 의견으로 26명의 학생이 냈다. 야자는 야간자율학습의 준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율이란 단어다. 자율의 뜻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함’ 이란 뜻인데 실제론 어떤가?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다. 거의 강제적으로 한다. 학교가 끝나고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또 덕분에 학원에 가려고 해도 학교에서 붙잡아 못간 얘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자율로 한다는 야자시간에 몇몇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이 아닌 시간엔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 이것이 과연 학생들의 자율을 존중하는 “자율학습”인 것인가?

3위는 급식개선이었다. 21명의 학생들이 급식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 놓았는데 급식의 양과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200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열아홉 동갑내기 이세준, 주덕진, 백인식 군의 학교대사전(고교 시절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과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적나라한 현실이 부합된 참신한 용어 해설서)이란 책에서는 급식을 ‘가장 싸면서도 위험한 식사. 정부에서는 이 때문에 일 년에 한 번씩 학생들의 폐 X-레이 사진을 찍게 했다. X-레이 찍을 돈으로 급식을 개선하는 것이 나을 듯.’ 규정한다. 이것은 급식이란 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체벌 문제도 있다.

#### 제18조(매의 횟수 제한)

- ① 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한 체벌로 5대를 넘지 못한다.
  - ② 사안별 매의 횟수제한은 다음과 같다.
    1. 17조 각호의 1을 4회 이상 어겼을 경우 3대
    2. 학교생활이 불성실하여 4회 이상의 주의를 받고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경우 4대
    3. 위의 1,2의 제재를 가했음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경우 5대
- 제19조(매를 대는 부위) 매를 대는 부위는 신체 중 가장 안전한 부위 한다.

#### 제20조(매의 비치와 종류)

- ① 학교는 매(지름 1cm, 길이 50cm)를 교장실과 교무실 등 학생의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 ② 매의 종류는 위의 1항에 비치된 ‘사랑의 교편’을 사용하고 그 외의 매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체벌규정의 일부분이다. 이 내용을 본다면 학생들은 분명 코웃음을 칠 것이다. 과연 이 규정대로 지키는 선생님이 얼마나 될까? 마대자루와 야구방망이, 심지어 소화기까지 학생들의 체벌에 사용

된다고 하는 요즘 현실이다. 학생들한테 학교 규정을 지키라고 하기 전에 이런 규정부터 지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을 것이다. 체벌도 체벌이지만 인격 모독도 그냥 넘어갈수 없다. 많은 학생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린 다던가 하는 수치심을 주는 체벌이나 심한 욕설들.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사람들은 이런 비인권적인 일들을 학교에 건의를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한다. 학교 홈페이지는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고 글 쓰는 것 또한 실명이 공개된다. 어떤 한 학생이 학교의 심각함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다음날 선생님들에게 체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 누가 학교에 그런 건의를 하겠는가? 학생인권을 주장하며 선생님에게 대들었다간 오히려 학교에서 잘린다거나 문제아로 찍힌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학교인권지킴이란 홈페이지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두발자유를 주장하다 퇴학을 받았다던가, 심한 체벌을 받았다고 한다던가 하는 글들이 많이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학교에선 학생들의 인권이 존재하는 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서로를 이해하란 말이 있다. 이해와 타협으로 학교와 학생이 서로 다가가야 한단 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날이 언제 쯤 올까란 궁금증이 생긴다.

차이를 인정하고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하는 학교에서 우리들은 단지 교육의 객체이고, 단지 공부를 해야하는 기계일 뿐이다. 청소년이 아닌 학생일 뿐이다.

이러한 학교에서 자라고 배운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시민사회가 될 수 있을까?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역내에서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어떤 독일의 한 인권운동가가 한국을 다녀가고 나서 한 말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는 감옥도, 그 어느 곳도 아니다.

바로 교육기관인 학교이다.”

## 청소년 인권과 18세 선거권

전누리 (낮추자)

### 1. 왜 15세~25세 중 18세 여야 하는가?!

- 사회적 · 법적인 의무와 권리의 합치

한국에서 만 18세의 의미는 특별하다. 일단 청소년들 중 대부분 자신이 성인이라고 느낄 때가 만 18세가 되었을 때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의무 법적인 의무들도 만 18세부터 담당하고 있다.

국민의 의무(법령)	나이(만 나이)
병역의무(병역법)	18세
주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법)	17세
공무원임용(공무원법)	18세(고용직 14세)
결혼(민법)	남 18세, 여 16세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8세가 되면은 결혼을 하여 가정도 꾸릴 수 있으며,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에서 총을 들어야 한다. 또한 돈을 벌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며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많은 사회적 의무들이 18세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19세로 한 것은 의무와 권리를 불일치하는 것이다. 즉 의무는 있고 권리만 없는 나이 18세가 생기는 것이다.

ex) 영국의 사례

영국의 16세 선거권 배경

- 학교에서 종립적 정치교육 실행

- 결혼 및 국방의 의무 16세부터 가능(여러가지 의무가 16세에 있음)

- 청소년의 정치참여

-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이미 대세이다.

18세 선거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18세 선거권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물꼬를 튼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은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의 주역이었으며 정치적 의식 수준과 참여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성인들 못지않다. 효순이-미선이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나섰던 세대, 입시경쟁교육 반대 시위, 두발규제 폐지 집회를 주체적으로 조직하고 주도해나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억해보면 쉽

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만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19세 이상의 선거권은 민주화가 점점 고도화 가는 시대흐름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lt;5월 7일 촛불문화제&gt;



전 세계의 150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연령을 부여하고 있고 독일은 일부 주에서는 이미 16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이런 사회 분위기속에서 나온 안나 뤼어만은 15세에 녹색당에 가입하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19세 국회의원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 • 2002년 미션-효순 촛불 시위

- 또래의 죽음을 자기문제로 인식한 의정부여고 학생(죽은 친구의 언니 학교)거리 시위 학생들이 나와서 집회, 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이 사건이 알려짐

- 1차, 2차, 3차 청소년 행동의 날(청소년 스스로 집회 주도)

- 2002년 광화문 수십만의 촛불 중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음

#### • 강의석군 종교자유 싸움

-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교 안에서의 문제제기를 밖에서까지 한 사람은 없었음 -> 강의석군은 이를 행동으로 옮김

- 여러가지 압박과 탄압이후 단식으로 운동 방법 변경

#### • 입시경쟁교육에 희생된 학생들의 추모제(5월 7일)

- 학생 약 1000여명(언론사 400명)이 거리로 나옴

- 교사 및 교육부 관계자 약 700명

- 학생들의 움직임 무서워 함

- 희망에서 있었던 일 설명

#### • 두발 자유를 위한 학생들의 촛불 시위(5월 14일)

-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두발 문제 들고 거리로 나옴

- 5월 7일 파급력이 두발 지침 완화로 이어짐

#### 결론

청소년이 정치참여 -> 사회와 청소년 현실이 바뀐다

#### 4.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은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일어났다. 각 개별 단체 및 정당에서 산발적으로 선거 시기마다 움직임이 조금씩 있었다. 이런 조금한 움직임을 큰 힘으로 모으려고 했던 것이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 연대(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의 전신)였다. 2004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7대 국회 국민청원 1호로 “선거연령하향(18세) 조정에 관한 청원”을 냈으며, 이후에 각 당대표 면담, 서명 운동, 페스티벌,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다.



&lt;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선언&gt;



&lt;18세 선거권 문화축제&gt;



&lt;기획포럼-청소년에게 정치란 금기인가?&gt;



&lt;학생의 날 18세 선거권 낮추기 홍보&gt;



&lt;'정치관계법 개선방안 공청회' 참가&gt;



&lt;'우리는 18세 선거권을 원한다' 국회 앞 퍼포먼스&gt;



&lt;국회의원 버튼 달기 운동&gt;



&lt;버튼&gt;

###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 활동내역

- 2004년 5월 9일 18세 선거권을 위한 청소년자치활동단체 첫 회의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 단체 이름 결정
- 2004년 5월 12일 국회의사당 앞 1인시위 및 광화문 180만서명운동 시작
- 2004년 5월 18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대표 면담(18세 선거권지지 입장 표명)
- 2004년 5월 31일 18세 선거권 인하 촉구 성명서 발표  
17대 국회 국민청원 1호로 “선거연령하향(18세) 조정에 관한 청원” 제출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 개칭(청소년만이 아닌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등을 포괄하여 함께 18세 선거권을 낮추기 위한 넓은 이름으로 개칭)
- 2004년 6월 22일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선언(명동미지센터)
- 2004년 7월 14일 124명 국회의원 18세 선거권 지지 서명 받음
- 2004년 7월 20 ~ 11월 현재까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18세 선거권 인하 공약 실천 촉구 대회 공동 참가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 기획 포럼> 개최  
<Festival For 18's> 축제
- 2004년 8월 5일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 청소년 회의 주관 <세상에 중심에서 인권을 외치다!> 홍보 및 서명 운동
- 2004년 9월 18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방안 공청회’ 참가, 기자회견 및 18세 선거권 낮추기 여론 형성
- 2004년 10월 2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공식 방문하여 18세 선거권 하향 요청
- 2005년 1월 8일 국회 정치개혁 협의회,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
- 2005년 2월 4일 국회의원 18세 선거권 빼지 달아 주기 캠페인 개최
- 2005년 2월 14일 ‘우리는 18세 선거권을 원한다’ 국회 앞 퍼포먼스 개최
- 2005년 4월 8일 18세 선거권을 지지하는 청소년계 인사 및 단체 기자회견
- 2005년 4월 27일
- 2005년 6월 28일
- 2005년 6월 29일

시기	활동 내용
1995년 6월	진보정당추진위원회,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소송
1995년 12월	경실련, 전국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 선거연령하향화 주장(18세)
1996년 3월	충북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낭랑 18세 운동” 전개
1996년 3월	서울대·이화여대 신입생 14명, 직장인 1명 등 총 15명 헌법소원 제기
1996년 4월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헌법소원심판 청구
1997년 3월	대학생유권자위원회, 선거연령 18세 주장
1997년 6월	1차 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기각
1999년 4월	경실련, 선거연령 19세로 낮출 것을 포함한 정치법안개정안 입법청원
	청협 주최 ‘청소년대토론회’ 참가 청소년이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제안
1999년 5월	청소년연대준비위원회(문화부 청소년위원회 회장 외), 18살 참정권허용운동 준비
2000년 4월	2차 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각하
2001년 6월	3차 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기각
2002년 4월	4차 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기각
2002년 5월	문화연대,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정치참여 토론회 개최
	낮추자 대선 모의투표 실시
2002년 12월	아이두 청소년선거권획득 온라인 서명운동, 온라인 대선모의투표 실시
2003년 5월	민주노동당 제1회 18세 정치적 성년 선포식 개최
2003년 8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개회
2003년 11월	5차 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기각
	민주노동당 청소년당원들, 18세 선거연령 인하 요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2004년 2월	정치개혁대학생연대, 유니보터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 19세 투표권 요구 기자회견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학생당원, 피선거연령 인하 헌법소원 제출 및 기자회견
	낮추자 선거인단 모집, 총선 모의투표 실시
2004년 4월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청소년 유권자 축제 개최, 고양시4개 선거구 온라인 모의투표 실시
	민주노동당 제2회 18세 정치적 성년 선포식 개최
2004년 5월	<18세선거권낮추기청소년연대 결성>, 국회앞1인시위 및 광화문 180만 서명운동 전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면담, 17대 국회 국민청원1호로 “선거연령 하향(18세)조정에 관한 청원” 제출(소개의원: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
	<18세선거권낮추기청소년연대>, <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로 개칭
2004년 6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청소년실태 거리캠페인 진행, 서울시난장 참여(18세 선거권 홍보)

## 2. 청소년의 반응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청소년의 반응은 반반 정도였다. 다음 아고라에서 설문을 했을 때는 약 5000명 중에 60%이상이 선거연령 18세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은 극히 소수였다. 그리고 성인들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논리를 청소년도 똑같이 받아들여 반박하기도 하였다.

얼마 전 6월 30일날 19세 선거권 안이 통과 되었지만 이 운동의 나름대로의 의의는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았고 일부 관심있는 층은 우리가 왜 18세 선거권을 주장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18세 선거권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참여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정치개혁 특위협의회에서 19세 안을 잠정 합의했을 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10%의 고등학생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라는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 하려고 한다. 크게 4가지로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정했다.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정치교육법 제정,

–학칙 내 정치–사회참여 금지 폐지

## 3. 마무리

– 18세 선거권 운동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자.

• 19세기에 노동자가 참정권을 얻었고, 20세기에는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21세기는 청소년이 참정권을 얻을 시기이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생기고 여성의 권리가 눈부시게 달라졌다.. 청소년의 참정권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 것이다.(청소년의 권리 증진된다.)

–자기 만족적 운동하지 말자.

• 예로서 18세 선거권이 관철 안되었는데 난 할만큼 했어 혹은 이 정도면 내 성장에 도움이 되었어 이런 마음의 운동이 아닌 이것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객관적이라는 틀에 얹매이지 말자.

• 모든 정치적 사항은 당파적일 수밖에 없다.

• 비정치적으로 활동하는게 아니라 정치를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여 활동하자

–연대의 방향으로 운동하자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voting18>

### **III. 청소년 자유발언**

## 1318의 권리!! 청소년인권!!

정원영(태성고 1)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인권을 다른 사람들(인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청소년인권, 낯설다면 낯설고 가깝다면 가까운 웬지 아리송한 말이다. 나도 예전에는 청소년 인권이란게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YMCA에서 활동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이런저런 강의를 듣다보니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소년 인권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 인권은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켜져야 될 권리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켜야 하는 권리”이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청소년 인권! 청소년 인권!’ 하지만 내 주위의 어른들은 그저 콧웃음만 칠뿐이었다. 아니, 이렇듯 ‘왜 청소년 인권이 필요한지도 모르시는분’들도 허다하였다.

나는 이렇듯 무관심하고 청소년을 이해 못하는 어른들의 태도가 섭섭하다. 청소년들이 그렇게도 한심한 존재인가?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뒤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예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참정권이란 만 20세가 넘으면 우리나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는 옛날에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무척이나 반대하였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세계를 보는 시야가 좁고 사탕발림에 잘 넘어가는 청소년에게 무슨 참정권이냐?’라는식으로 일반 어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청소년 참정권이 왜 필요한지 YMCA에 강의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에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청소년 참정권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하다. 청소년은 국가에 납세, 결혼, 군역, 아르바이트등 어른들과 별반 차이나지 않게 생활하며 산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과 같은 일을 하며 참정권을 얻지 못한다. 이건 완벽한 모순이다. 또 내가 본 어른들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으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와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시는 행동 때문이다.

청소년 인권을 지키려면 우리 청소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청소년 행동에 걸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요즘에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너무 위험한 행동과 어른스러운 행동을 한다. 계속 그런 식으로 활동하다보면 결코 어른들께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며 나중에는 청소년 인권을 무시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한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질줄 아는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실수를 남에게 미루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 된다면 청소년 인권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그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만 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없는 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른들이 청소년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우선(첫째로), 옛 생각 즉 옛날의 청소년을 잊어버려야 한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 무조건 보호받고 감시받아야 하는 계층이 청소년이 아니다.

세계는 많이 변하였다. 또한 사람들도 많이 변하였고 청소년들도 옛날에 비해 생각도 깊이하고 정치, 사회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도 높아졌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을 무시하지 않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주어야 한다.

둘째로 어른들은 자신에 인권이 소중한 것처럼 청소년 인권도 소중히 여겨 줄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사람에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래의 주역이 청소년이라고만 떠들지 우리의 성적이 아닌 우리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청소년들에게 따듯하고 감동 받을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한다면 청소년들에게는 무척 힘이 되고 용기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어 나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도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글을 쓰면서 청소년 인권이란 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했다. 또한 어른들만 청소년 인권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끼리도 얼마든지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 할 수 있었다.

철없던 나의 중학교 시절을 지나고 고등학교생활과 YMCA생활을 하면서 한층 더 성숙해진 내가, 나 자신의 권리이기도한 청소년인권에 대해 글을 쓰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 나를 다시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마음이 뿌듯하였다.

앞으로 청소년 인권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싶다.

## 묻혀질대로 묻혀진 청소년 인권

오은정(용인고1)

### 어린이 ·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제 1조(청소년의 정의)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 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 2조(차별 방지)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영어를 쓰는 한국어를 쓰는 서울말을 쓰는 사투리를 쓰든,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든 아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제 13조(표현의 자유) 우리는 말과 글,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가를 잘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

제 14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어야 한다.

제 15조(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 된다.

제 16조(사생활·명예·신앙) 우리는 개인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3조(장애인아동)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0조(소수 집단 또는 원주민 아동) 소수 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 31조(휴식·여가·문화 생활) 우리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32조(아동의 노동)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

제 34조(성적 착취)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 없다.

제 35조(아동의 유괴·매매·거래)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 40조(소년 사법의 실행)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 42조(조약의 총보 의무) 모든 어른과 청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현 위치에서의 청소년 인권은 정말로 많이 침해가 된다.

"제 42조(조약의 총보 의무) 모든 어른과 청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현 위치에서의 청소년 인권은 정말로 많이 침해가 된다." 이것이 제 42조의 내용이다. 하지만 국제 아동 청소년 인권 협약에 대해 아느냐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아니요."라는 대답이 월등히 많았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조차도 이 조약에 대해 모른다.

이렇게 아동 청소년 국제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않 지켜지는 게 정말 많다. 학교에서는 자유롭게 삭발도 못하며 자유롭게 머리도 못 기르고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학부모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학교 규칙은 거의 선생님 선에서 학교 규칙이 정해지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며 학생들이 거가는 장소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판치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계속 억압 되어 가고만 있다.

사회에선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도 시켜주지도 않는다. 18세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는 물론 국방의 의무까지 주어지는데, 왜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18세 참정권은 국회에서 통과는 되었으나 언제 이루어 질지는 잘 모르겠다.

또, 어른들은 할 수 있는 집회, 시위조차 청소년들은 하지도 못하고 있다. 두발 자유로 인한 집회, 입시 제도로 인한 집회가 있었으나 경찰에게, 선생님에게 제지를 당했다.

청소년들은 사회와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중년의 인권만 있을 뿐 청소년 인권은 죽은 것 같다. 청소년의 인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이 아닌, 사회 봉사자가 아닌, 우리 청소년이 일어서야 할 문제이다.

저번에 인터뷰를 다녀왔는데 정말 와닿았던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 청소년의 인권 실태에 대해 여쭈어 보았더니 선생님께서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많아도 청소년들의 권리는 있잖아요. 저는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어른들이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 어른들이 청소년 때의 일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청소년 시절 때 월 힘들어 했고, 월 얻고 싶었고, 이런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른이 되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만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거 같아요 근데 청소년이 누릴 자유나 권리는 다 있잖아요 그 때만 누려야 할 그 것을 다 뺏어서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만을 시키잖아요 저는 어른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은 지금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아요" 정말 청소년들은 어른이 조종하는 리모컨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같아 이 말이 정말 내 마음 속에 깊이 와 달았다. 밤 늦게 다녀선 안된다,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한다. 라든지, 어른이 조종하는 리모콘 아니라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커서 대통령, 대기업 비서, 50평짜리 아파트, 강남에 땅 100평이 행복에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행복함을 깨달을 수 있는 현명한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다. 나 역시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태어나 입시제도에 시달려 행복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으로 공부에 시달리는 나를 보며 방황을 하긴 하지만, 이젠 나의 목표를 찾고 나의 행복을 찾아 다니며 노력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되고 내가 되어야겠다. 이젠 나 뿐만이 아닌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자신의 인권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